

# 해외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행정조치 연구 (부제: CDN사업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dministrative Measures for Foreign Businesses under Copyright Law (Focusing on CDN Service Providers)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법연구소

(연구책임자: 전용준)

2024. 12. 31.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 제 출 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 용역과제인 “해외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행정 조치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 주관연구 수행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법연구소
- 연구책임자: 전용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 공동연구원: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연구원: 신동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
- 공동연구원: 윤혜정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 용역과제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제2024-06호	연구기간	2024년 9월 27일 ~ 2024년 12월 20일		
정책과제명	해외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행정조치 연구 (A Study on Administrative Measures for Foreign Businesses under Copyright Law)				
연구책임자 (주관연구수행기관)	전응준	참여 연구원수	총 3 명	연구 용역비	이천만원
요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500자 이내에서 개조식으로 작성)				면수	135면
<p>한국 저작권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정되었으나, 해외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대응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정권고 제도의 강제력 부족, 접속차단 조치의 우회, 국내외 OSP 간 규제 형평성 문제, 역외적용 한계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국제적 협력 없이 국내 법률만으로는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p> <p>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은 강력한 규제와 역외적용, 실시간 차단 및 모색적 금지명령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실시간 차단과 기술적 진보를 활용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p> <p>CDN 사업자의 법적 지위 분석과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 불법 콘텐츠의 삭제·차단 의무, 적법성 확인 의무, 침해 방조 시 법적 책임 부과 등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을 체계화할 수 있다.</p> <p>제도적 개선 방안으로는 실시간 차단 및 모색적 금지명령 채택, CDN 사업자의 책임, 역외적용 조치 도입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p>					
색인어	한글	시정권고, 역외적용, 모색적 금지명령, CDN 사업자			
	영어	Corrective Recommendat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Dynamic Injunction, CDN Service Provider			



## 요약문

### 1. 저작권 침해 정보 등을 유통하는 해외 OSP에 대한 대응 및 조치 현황

#### 가. 우리나라의 해외 OSP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조치현황

##### 1)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정보 규제 현황

- 온라인상으로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는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규정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온라인상 불법정보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유통이 금지됨
-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제133조의2, 제133조의3 등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5조에 따라 저작권법상 특별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 2024년 11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불법정보의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제도

-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조항은 2006년 개정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최초로 신설됨. 이후 2009년 이 법이 폐지되면서 시정권고 조항은 저작권법에 그대로 신설됨
- 2009년 개정 저작권법에 시정권고 제도와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i)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OSP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되며, (ii)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iii)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됴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임

### 3)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

-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재판관할권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고, 형법 제2조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외국인 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음
- 현재 해외 OSP에 대한 접속차단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고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2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는 심의를 거치게 됨.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OSP에 대하여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로써 시정할 것을 요구하게 됨. 제재조치의 종류를 결정 등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에 따른 제재처분의 권한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이행하는 2단계 구조를 갖고 있음

### 4) 소결

-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제도는 시정명령과 달리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조치에 대해 OSP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임. 나아가, 해외 OSP에 대해 시정권고 및 그에 따른 시정명령의 집행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등 기타 행정집행을 시도할 경우, 해당 해외 사업자는 자국에서 기타 행정집행의 역외적용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해외 OSP의 불법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접속차단 조치는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음.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사 또는 대체사이트를 통하여 다시 게재될 수 있고,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 때문에 용이하게 접속차단 사이트를 우회하여 다른 방법으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
- 해외 OSP에 대한 조치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역차별 문제도 발생
- 따라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최근에는 ‘실시간 차단(live blocking)’과 새로운 유형의 금지명령인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이 등장하게 됨

## 나. 해외 OSP에 대한 주요나라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조치 현황

### 1) 서론

-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최근에는 ‘실시간 차단(live blocking)’과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이 시행되고 있음. 실시간 차단은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모색적 금지명령은 호주,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 2) 미국

#### 가)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쟁점

#####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른 접속차단조치

- 미국 DMCA는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에 관한 벌칙규정을 도입
-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우회하고자 의도한 기술과 장치, 서비스의 제조 및 유통을 형사별로 규정
- 외국의 지사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해외에서 영업하는 법인으로서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에 대해 역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음

##### ▷ 해외 사이트 차단조치의 역외적 적용 여부에 대한 미국의 사례

- 미국 밖에 소재하는 웹서버가 미국내에서 거주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콘텐츠를 호스트하는 경우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Spanski Enterprises v. Telewizja Polska 사건: 미국 연방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 RJR Nabisco, Inc. v. European Community사건: “법의 초점에 관련된 행위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그 밖의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건에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n Bank Ltd.사건: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초점은 보장하는 권리의 배타성을 보호하는 것”

#### 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제 시도

##### ▷ Protect IP Act 및 Stop Online Piracy Act

▷ Onlin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Digital Trade Act

### 3) 유럽연합(EU)

#### 가) 유럽연합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및 유럽연합 집행지침

- 유럽연합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8조 제3항은 제3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 증개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최초의 법제
- 유럽연합 집행지침 제11조에서는 유럽연합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8조 제3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데에 사용되는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규정하기 위한 일반 요건을 도입

#### 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

- Compositeurs et Éditeurs SCRL (SABAM) 사건과 UPC Telekabel Wien GmbH v. Constantin Film Verleih GmbH and Wega FilmproduktionsgesellschaftmbH 사건에서 유럽연합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에 따른 접속차단명령의 비례성에 대하여 판시

### 4) 호주

#### 가) 사이트 차단명령(Site blocking order)

-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 2015년 6월 도입
- Roadshow Films Pty Ltd. v. Telstra Corporation Ltd 사건에서 2016년 12월에 최초의 금지명령이 내려짐(제115A조에 따른 사이트 차단명령은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에 대한 금지명령)
- 2018년 11월 28일 의회에서 승인된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하여 웹사이트 차단제도의 범위를 확대함
- (i) 법원의 금지명령 시 요건 완화를 통하여 접속 차단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ii) 금지명령의 대상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뿐만 아니라 온라인검색엔진제공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도록 허용하는 내용, (iii) 추가적인 금지명령 없이도 신규 또는 관련된 온라인 주소에 적용되도록 기존 금지명령을 준용할 수 있는 연방 법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김

## 나) 모색적 금지명령

- 2023년 7월 7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연방지방법원은 차단명령을 내림
- 법원은 49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 IP 주소 또는 URL에 대해 접속을 차단할 것을 지시
- 차단을 우회하기 위한 대체 도메인, URL 또는 IP 주소도 동일하게 금지 명령을 적용받게 됨
- 차단 명령의 효과는 3년간 유지되며 3년 이후에도 '주된 목적 또는 효과'가 있을 경우 3년 연장 가능

## 5) 영국

- 2017년 영국 법원이 영국의 6대 소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실시간 차단 명령을 내림
- The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Limited v.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and others 사건: 이용자의 인터페이스에 침해물을 공중송신하기 위해 이용되는 스트리밍 서버에 대해 실시간 차단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해당 시점기간에만 적용)
- 영국 저작권법 제97조의A에 따라 사이트제공자가 그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하는 데에 사용하는 제3자의 침해행위를 현실로 알고 있는 경우 그 사이트 제공자에 대해 금지명령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

## 6) 싱가포르

- Disney Enterprises, Inc. and others v. M1 Limited and others 사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최초로 웹사이트 접근금지를 명하는 모색적 금지명령을 발함
-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주된 금지명령의 대상인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새로운 도메인 이름, URL 및 IP주소를 차단하도록 함
- 2020년 7월, 싱가포르 법원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디스커버리, BBC, 라리가 및 TVB의 저작물을 포함하여 노골적으로 불법복제하는 15곳의 온라인 위치에 대한 모색적 금지명령을 내림

## 7) 스페인

- 2020년 2월, 스페인 방송사인 Telefónica Audiovisual Digital(라리가에 대한 권리를 가진 방송사)와 라리가 리그 경기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플랫폼인 Movistar Plus(모비스타 플러스)가 ISP들에게 44개의 불법 복제 사이트와 서비스를 식별하여 URL,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를 차단하는 데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신청한 것에 대하여 스페인 마드리드 상사법원은 모색적 차단금지명령을 발령함(이 모색적 차단금지명령은 2022년 5월 25일까지 유효하며 3개의 축구 시즌을 포함하도록 설정)

## 8) 멕시코

- 2019년 2월 멕시코의 산업재산청(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은 불법복제 사이트인 Rojadirecta를 차단하기 위하여 라리가의 권리자에게 멕시코 사상 최초로 모색적 금지명령을 실행(해당 시즌에 시합이 방송된 날에 한하여 적용)

## 9) 스웨덴

- 2019년 12월에 스웨덴의 특허 및 시장 법원(Patent and Market Court)은 모색적 금지명령을 최초로 발령 (3년간)

## 10) 오스트리아

- EU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8조 제3항을 반영하여 모색적 금지명령을 규정
-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81조 제1a항은 '오스트리아 이외의 온라인 로케이션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11) 인도

- 2023년 인도 Applause Entertainment Pvt. Ltd. v. Meta Platforms Inc. 사건 : 뭄바이 고등법원은 32개의 인스타그램(Instagram) 계정에 대해 모색적 금지처분을 내림
- 법원은 모색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사한 웹사이트와 플랫폼에 대한 명령이 연장될 수 있음을 판시
- Sony Pictures Animaion Inc. V. FLIXHD.CC/&Ors. 사건 : 영화가 개봉되기 전임에도 피고 웹사이트에 대하여 ISP가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통신서비스 제공업체(the telecom service providers)에 웹사이트를 차

단하도록 지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차단 명령을 내림)

## 12) 아르헨티나

- 연방 민·상사 법원은 2022년 12월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한 것을 명하는 모색적 금지명령을 내림
- ISP들로 하여금 문제되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의 IP주소와 도메인 네임, 나아가 이후의 대체 사이트와 새로운 도메인 네임까지도 차단할 수 있도록 명령에 포함

### 다. 해외 OSP를 포함하는 모색적 금지명령 조문 설계(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3조의2 개정안 제시)

- ▷ 국외 소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조문 설계의 필요가 있음.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를 참조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면 다음과 같음

저작권법 개정안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1. 12. 2.] ③ 국외에 소재하는 불법복제물의 주된 목적 또는 주된 효과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123조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도메인이름, 인터넷주소 위치지정자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또는 이용자를 그 불법복제물로 안내하는 검색결과와 제공을 막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효과이론에 따라 저작권법 제103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국외 소재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도 적용됨
- 다만, 이 조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의 주된 목적 및 주된 효과가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 한함
- 그 방안으로서 접속차단조치와 비색인화 조치 둘 다 허용하고 소송계속중 명령의 범위 변경 및 취소를 인정하여 모색적 금지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2. CDN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의 법적 근거

### 가. 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분석

#### 1) 미국의 사례

##### 가) CDN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줄 의무를 부담한 사건

- ▷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CDN 사업자에게 불법 사이트 운영자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3자 소환(third party subpoena)'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인정된 사건(Elsevier Inc. v. WWW.SCI-HUB.ORG)

##### 나) 호스팅 업체의 책임에 대해 다른 사건

- ▷ 피고의 주요 고객인 VPN 제공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 해적행위를 하는 데 피고에게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 책임, 대위책임 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Millennium Funding, Inc. v. Sharktech, Inc., 합의로 마무리됨)

##### 다) Cloudflar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 ▷ Cloudflare의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제공한 서비스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Mon Cheri Bridals, LLC v. Cloudflare, Inc.)

## 2) 유럽의 사례

### 가) 독일의 사례

- ▷ Cloudflare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행위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Cloudflare의 CDN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Cloudflare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한 사건

### 나) 이탈리아의 사례

- ▷ CDN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서비스 차단 명령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 사안
  -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과정에서 CDN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서비스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밀라노 법원은 호스팅을 하든 캐시를 제공하든 상관없이 CDN 업체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보고, 2020년 10월 5일에 최초로 CDN 업체에 대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콘텐츠를 무단 전송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CDN 서비스 제공을 즉시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림
- ▷ CloudFlare와 같은 DNS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 콘텐츠 유통을 돕는 사이트에 대해 차단할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되어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

## 3) 일본의 사례

### 가) 사례 1

- ▷ Cloudflare에 대해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기사 데이터 삭제 및 발신자 정보 공시 가처분 명령을 내린 사건
  - 다만 (i) CDN 업체는 Cloudflare 외에도 다수 존재하고, (ii)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가 가명으로 계약 체결 시 정보공시의 의미가 없으며, (iii)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외국 거주 시 사이트 운영 정지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음

### 나) 사례 2

- ▷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C 정보 사이트 외에도 CDN 업체에 삭제의무 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도쿄지방법원은 2018년 1월 28일에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Cloudflare에 원고의 일러스트 삭제 및 정보 사이트 관리자의 로그인 시 IP 주소 등 정보 공시를 명령하는 결정을 함

## 나. 해외 법제에 따른 CDN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의 성립가능성

### 1) 미국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의 법리

- ‘기여책임’의 요건은 (i)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ii) 침해행위를 유인, 유발하거나 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설명됨
- ‘실질적 기여’ 요건에 관하여는 타인의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및 능력이 있을 것이 요구됨
- ‘대위책임’의 요건은 (i) 침해행위를 통제·감독할 권리와 능력이 있을 것, (ii) 당해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설명됨

### 2) CDN 사업자의 권한과 기술

- CDN사업자는 불법 콘텐츠를 배포하는 네트워크와 캐싱 기능을 포함하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콘텐츠 로드 속도를 높임. 나아가, 보안서비스를 제공함. 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을 주장하는 소가 해외에서 발생됨

## 다. 우리나라 법리에 따른 CDN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성립가능성

- 저작권침해 결과발생지에는 저작권침해 지향지가 포함되어 국제사법상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준거법과 관련해 저작권침해가 의도적으로 지향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함. 따라서 저작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규제는 입법관할과 집행관할의 영역이 될 것이고 주권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외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한 당시 이 협약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상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함. 저작권침해의 지향지가 우리나라인 이상, 역외적용이 아니라 역내적용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함
- 저작권법 제10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원은 도관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수 있음

- 저작권법 제10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캐싱서비스 제공자, 저장서비스 제공자 및 검색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및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저작권법 제103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조문의 성격상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이러한 논리는 CDN 사업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서 국외 소재 CDN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3. CDN 사업자를 현행 저작권법상 OSP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CDN 서비스의 내용과 특징

##### 1) CDN 서비스의 역할

-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콘텐츠를 사용자와 가까운 서버로 전송하여 네트워크 효율성과 전송 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함
- 원본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콘텐츠 제공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캐시 서버를 이용함

##### 2) 주요 기능

- 캐싱: 자주 요청되는 콘텐츠를 캐시 서버에 저장해 원본 서버 요청을 줄이고 전송 시간을 단축함
- 트래픽 분산: 네트워크 부하를 분산시켜 서버 과부하를 방지
- 애니캐스트 라우팅: 요청을 가장 가까운 서버로 보내 네트워크 지연(latency)을 감소
- 보안 기능: DDoS 방어, 데이터 암호화(TLS/SSL), 방화벽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함
- 속도 최적화: HTTP/2, 콘텐츠 압축, 동적 콘텐츠 가속화를 통해 로딩 속도를 개선함

### 3) CDN의 부정적 활용

- CDN의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는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악용함
- CDN의 보안 기능은 법 집행 기관의 추적 회피와 불법 사이트 운영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품질 동영상 스트리밍과 같은 불법 콘텐츠 제공 시 CDN의 속도 최적화 기능을 활용해 서버 노출 없이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음

## 나. 저작권법상 OSP의 정의와 CDN 사업자의 OSP 해당 가능성

### 1) OSP의 정의

-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는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

- 2011년 개정을 통하여, 가목은 인터넷접속서비스(단순도관) 제공자를, 나목은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 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

### 2) CDN 사업자의 OSP 해당성 및 책임 제한

- CDN 사업자는 주로 캐싱 기능을 제공하며 전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함
- 캐싱 서비스는 현행 OSP 정의에 포함되므로 CDN 사업자는 OSP에 해당하고, 나아가 OSP 책임제한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음
- CDN 서비스가 전통적 의미의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저작권법상 OSP 중 호스팅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3) CDN 사업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

- CDN 사업자는 콘텐츠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므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의 수령자가 될 수 있음
- 독일과 이탈리아 법원이 CDN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CDN 사업자에게 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임
- 기술적 특성상 복제·전송 중단 요구의 실효성은 캐시 서버 위치와 콘텐츠 관리 권한에 따라 달라짐

### 다. CDN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정보제공명령의 거부 및 집행

#### 1) 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정권고, 정보제공명령의 거부

- 국내에 캐시(에지)서버를 두고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입법관할권의 일반원칙인 속지주의 관점에서 국내 저작권법이 적용됨
- 주요 외국 CDN 사업자(Akamai, Cloudflare 등)는 국내에 캐시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 가능
- 최근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5항도 국내에 캐시 서버를 둔 외국 사업자를 수범자로 하는 것으로 보임
- CDN 사업자를 저작권법상 OSP로 본다면, 법리적으로 시정권고, 정보제공명령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음

#### 2) 집행가능성 및 집행절차

- CDN 서비스의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 등의 집행을 할 수 있음
- 불법 사이트가 이용하는 CDN 서비스의 제공 사업자가 국내 기업인지 외국 기업인지 확인하고, 국내 기업이라면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정보제공을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
- 불법 사이트가 이용하는 CDN 서비스의 제공 사업자가 외국 기업인 경우 해당 불법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 등의 저장 캐시 서버의 위치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확인

- CDN Trace 명령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캐시 서버가 있는지 확인.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정황을 인식”한 경우 침해 중단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CDN 사업자에게 캐시 서버의 위치를 조회하는 방안도 고려
- 캐시 서버의 위치가 국내인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CDN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정보제공을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
- 외국 CDN 사업자의 지사가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지사에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지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메일 등으로 통보. 송달 관점에서 외국 사업자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후술함

#### 4. 해외 OSP에 대한 제3의 행정조치 관련 연구

##### 가. 저작권법상 행정조치의 외국 사업자에 대한 적용 근거

###### 1) 국가관할권의 개념 및 원칙

- 국가관할권은 입법관할권, 재판관할권, 집행관할권으로 정의됨
- 입법관할권은 특정 사항을 법으로 규정할 권리로, 국가가 법규범을 선언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함
- 재판관할권은 당사자를 사법 절차에 복종시키는 힘을 뜻함
- 집행관할권은 법률, 판결, 명령 등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함
- 국제법상 원칙은 국가관할권을 제한하며, 타국 주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국가관할권의 행사에 한계를 부여함
- 국가관할권의 적용은 타국과의 협력과 국제적 관행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2) 입법관할권의 기준

- 속지주의는 행위 장소 또는 결과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입법관할권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 주관적 속지주의는 행위가 국내에서 시작된 경우 관할권을 인정하고, 객관적 속지주의는 행위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인정함

- 속인주의는 자국민에 대해 국내외 불문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이며, 형법에서 구현되어 있으나 행정법적 규제조치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기준임
- 보호주의 및 보편적 관할권 이론 역시 저작권 침해라는 사인간에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행위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이론임

### 3) 역외적용의 개념 및 근거

- 역외적용은 국내법을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에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 역외적용 이론의 대표적인 근거인 효과주의는 외국에서의 행위가 국내 법익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
- 국내 저작권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의 역외적용을 검토

## 나. 외국 OSP에 대한 시정권고의 적법성 여부

### 1) 국가관할권 및 역외적용의 관점

- 객관적 속지주의는 외국 OSP가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를 유발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 효과주의는 외국 OSP의 행위가 국내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법 적용을 가능하게 함

### 2) 행정절차법상 송달 문제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시정권고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음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외국 OSP에게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이메일 송달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함

### 3) 국제예양(comity)의 고려

- 외국 OSP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때는 국제적 협력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역외적용을 무리하게 강제할 경우 외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규제의 내용이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집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외국의 법체계 및 합법적 이익을 존중하며, 국제적 협력 기반에서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다. 제3의 행정조치의 가능성

### 1) 이메일에 의한 시정권고

- 서버 소재지가 불명확하고 국내에서 불법복제물의 접근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경우(국내 지향 서비스), 이메일을 통한 시정권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 반대로, 서버와 서비스가 명확히 외국에 기반하고 국내 지향성이 없을 경우, 이메일 시정권고는 적절하지 않음
- 이메일 시정권고를 공식적으로 적용하려면 송달 관점에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함

### 2) 저작권자와 공동으로 경고장 발송

- 저작권자와 보호원이 공동 명의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식을 제안함
-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근거로 삭제 및 전송 중단을 요청하며, 보호원은 시정권고 권한을 활용하여 이를 보완함
- 공동 대응은 외국 OSP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호원의 역외적용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음

### 3) 제103조 절차에서 보호원에게 대리권 부여

- 저작권법 제103조 절차에서 보호원이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러한 대리권 부여는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다수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4) 역외적용 규정의 입법 필요성

- 저작권법에 역외적용 규정을 명시하면 외국 OSP에 대한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
- 역외적용 규정은 국제법적 원칙과 외국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도입해야 함
- 국제 협력과 보편적 규범성을 기반으로 하는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규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표준을 형성할 수 있음

#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II. 연구내용	5
1. 저작권 침해 정보 등을 유통하는 해외 OSP에 대한 대응 및 조치 현황	5
가. 우리나라의 해외 OSP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조치현황	5
1)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정보 규제 현황	5
2)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제도	9
3)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	11
4) 소결	13
나. 해외 OSP에 대한 주요나라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조치 현황	15
1) 서론	15
2) 미국	15
가)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쟁점	15
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제 시도	21
3) 유럽연합(EU)	25
가) 유럽연합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및 유럽연합 집행지침	25
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	26
4) 호주	27

가) 사이트 차단명령(Site blocking order) .....	27
나) 모색적 금지명령 .....	33
5) 영국 .....	33
6) 싱가포르 .....	35
7) 스페인 .....	36
8) 멕시코 .....	37
9) 스웨덴 .....	37
10) 오스트리아 .....	38
11) 인도 .....	38
12) 아르헨티나 .....	39
다. 해외 OSP를 포함하는 모색적 금지명령 조문 설계(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3조의2 개정안 제시) .....	40
<b>2. CDN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의 법적 근거 .....</b>	<b>43</b>
가. 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분석 .....	43
1) 미국의 사례 .....	43
가) CDN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줄 의무를 부담한 사건 .....	43
나) 호스팅 업체의 책임에 대해 다른 사건 .....	45
다) Cloudflar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	47
2) 유럽의 사례 .....	48
가) 독일의 사례 .....	48
나) 이탈리아의 사례 .....	50
3) 일본의 사례 .....	53
가) 사례 1 .....	53
나) 사례 2 .....	54
나. 해외 법제에 따른 CDN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의 성립가능성 .....	55

1) 미국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의 법리 .....	55
2) CDN 사업자의 권한과 기술 .....	56
다. 우리나라 법리에 따른 CDN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성립가능성 .....	56
3. CDN 사업자를 현행 저작권법상 OSP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	58
가. CDN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유형 분석 .....	58
1) CDN 서비스의 내용 .....	58
2) CDN 서비스의 주요 특징 .....	59
가) 분산형 네트워크 - 캐싱 기능 및 트래픽 분산 .....	59
나) 보안 강화 .....	60
다) 속도 최적화 및 동적 콘텐츠 처리 .....	60
3) CDN의 동작 원리 .....	61
4) CDN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 시스템 구성 유형 .....	61
나. CDN 사업자가 현행 저작권법상 OSP에 해당하는지 여부 .....	62
1)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	62
2)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64
가) 저작권법 제102조 .....	64
나) 캐싱 .....	67
다) 호스팅 .....	68
3) CDN 사업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 .....	69
가) 저작권법 제103조 .....	69
나) CDN 사업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 가능성 .....	71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72
가) 저작권법 제104조 .....	72

나) CDN 사업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73
<b>다. CDN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정보제공명령의 가부 및 집행 .....</b>	<b>73</b>
1) 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정권고, 정보제공명령의 가부 .....	73
2) 집행 가능성 및 집행절차 .....	76
<b>4. 해외 OSP에 대한 제3의 행정조치 관련 연구 .....</b>	<b>79</b>
<b>가. 저작권법상 행정조치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적용 근거 .....</b>	<b>79</b>
1) 국가관할권의 의미 및 기본 원칙 .....	79
2)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준 .....	80
3) 역외적용 .....	82
가) 역외적용의 개념 .....	82
나) 국내법상 행정조치의 일반적 적용범위 .....	83
<b>나. 외국 OSP에 대한 시정권고의 적법성 여부 .....</b>	<b>84</b>
1) 국가관할권 및 역외적용의 관점 .....	84
2) 행정절차법상 송달 .....	84
3) 국제예양(comity)의 고려 .....	86
<b>다. 제3의 행정조치의 가능성 .....</b>	<b>87</b>
1) 이메일에 의한 시정권고 .....	87
2) 저작권자와 공동으로 경고장 발송 .....	88
3) 제103조 절차에서 보호원에게 대리권 부여 .....	89
4) 역외적용 규정의 입법 .....	90

Ⅲ. 결론 .....	91
1.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	91
2. 주요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 .....	91
3. CDN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강화 .....	92
4. 제도적 개선 방안 .....	93
5. 맺음말 .....	94
[참고 문헌] .....	96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디지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의 역할과 책임은 콘텐츠 유통 생태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간 경계 없이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국제적인 사안으로 확대되었다. OSP는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로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OSP를 규율하는 법적, 기술적 프레임워크 구축은 저작권 보호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OSP에 관하여 국내외 사업자 모두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되며,<sup>1)</sup> 특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시정권고, 정보제공명령, 계정정지 등 다양한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프레임은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글로벌 콘텐츠 유통망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외 OSP에 대한 행정조치는 역외적용 문제, 국제적인 법적 충돌, 그리고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의 형평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CDN(Content

---

1) 윤종수,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공법연구 제39집 제1호, 2010, 34면 각주 18면.

Delivery Network) 사업자는 온라인 콘텐츠의 저장 및 배포를 지원하는 기술적 중추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CDN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 유통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CDN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규제는 전체 법체계상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해외의 주요 CDN 사업자들은 국내에 서버를 두거나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면서도,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CDN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주요 국가에서는 OSP와 CDN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통해 OSP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정보사회 지침 및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을 통해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OSP 규제와 법적 책임 부여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술 발전과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확장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국내적 과제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법적 정교화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변화하고 있다. OSP와 CDN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규제 체계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해외사업자, 특히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사업자가 저작권법상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 분석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와 연구 범위를 설정한다. 첫째, 국내외 OSP 규제 현황 및 법적 근거를 비교하여, 외국 OSP에 대한 저작권법적 대응방안과 그 실효성을 검토한다.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는 외국 OSP에 대한 주요 국가의 대응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 법제와 국내법과의 차이를 검토한다.

둘째, CDN 사업자의 기술적 역할과 법적 책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CDN 사업자는 콘텐츠 전송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불법복제물의 유통에 관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법적 사례를 통해 CDN 사업자가 저작권법상 OSP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정권고나 정보 제공 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셋째, 외국 OSP 및 CDN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행정조치 방안을 모색한다. 기존 시정권고 및 접속차단 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및 실시간 차단(live blocking) 등 해외에서 적용된 최신 조치를 검토하고, 국내에서의 도입 가능성과 효과를 살펴 본다.

넷째, 외국 OSP 규제의 역외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국제 협력 및 국내외 법리 조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국내 법적 근거의 보완과 국제 관행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해외 OSP 및 CDN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연구내용

### 1. 저작권 침해 정보 등을 유통하는 해외 OSP에 대한 대응 및 조치 현황

#### 가. 우리나라의 해외 OSP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조치현황

##### 1)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정보 규제 현황

온라인상으로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는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규정을 근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라고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온라인상 불법정보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sup>2)</sup> 온라인상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근거하여 그 유통이 금지된다.<sup>3)</s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이해영,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계간 저작권』, 2020 여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94면.

3) 이규호,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의 도입 연구”, 『계간 저작권』, 2022 여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118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제133조의2, 제133조의3 등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5조에 따라 저작권법상 특별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sup>4)</sup>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를 정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의 저작권 침해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로 보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해외 사이트의 접속차단이라는 시정요구로 대응할 수 있다.<sup>5)</sup>

4) 이해영, 앞의 논문, 195면.

5) 방통위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26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 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방통위법 시행령 )**

[시행 2018. 5. 22.] [대통령령 제28888호, 2018. 5. 15., 일부개정]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2024년 11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불법정보의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6)</sup>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자율규제) ①·② (생략) <신설>	제44조의4(자율규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국내 온라인 사이트상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을 적용하되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정보통신망법과 방통위법을 적용하게 되어 규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즉, 국내 온라인 사이트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다.<sup>7)</sup>

## 2)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제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조항은 2006년 개정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최초로 신설되었다.<sup>8)</sup> 이후 2009년 이 법이 폐지되면서 시정권고 조항은 저작권법에 그대로 신설되었다.<sup>9)</sup> 2006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OSP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이유는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하고자 함이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사전적으로 OSP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정복제물 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2009년 개정 저작권법에 시정권고 제도와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i)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OSP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되며, (ii)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iii)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둬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

7) 이규호, 앞의 논문, 119면.

8)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시행 2007. 4. 5.] [법률 제8032호, 2006. 10. 4., 일부개정].

9) 저작권법[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에 따라 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심의한 후 보호원에 통보한다. 보호원은 위법 행위의 내용, 권고 사항, 시정 기한,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한다.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이행일자,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담아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에 따른 권고를 OSP가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sup>10)</sup>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sup>11)</sup>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조치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sup>12)</sup>

####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6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7일

10)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2항.

11) 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12)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3항.

2.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14일
- ② 보호원은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법 행위의 내용
  2. 권고 사항
  3. 시정 기한
  4.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호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④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란 국내법은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적용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국제화나 개방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원리에 근거해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sup>13)</sup>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르면 재판관할권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고,<sup>14)</sup> 형법 제2조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경우 역외적용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3) 온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조(석광현·이종혁 집필부분)

14)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 국제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전부개정]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현재 해외 OSP에 대한 접속차단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2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역외적용에 관한 조문이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온라인상으로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온라인상 불법정보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유통이 금지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5)</sup>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OSP에 대하여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로써 시정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sup>16)</sup> 이렇듯 인터넷

15) 정보통신망법 제44조7 제2항.

16) 이대희, “접속차단,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가능할까?”, 한국저작권보호원, 「CSTORY」.

에서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제재조치가 진행된다. 즉, 제재조치의 종류를 결정 등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에 따른 제재처분의 권한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이행하는 2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sup>17)</sup>

#### 4) 소결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제도는 시정명령과는 달리 강제력이 없다. 즉, 행정지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조치에 대해 OSP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해외 OSP에 대해 시정권고 및 그에 따른 시정명령의 집행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등 기타 행정집행을 시도할 경우, 해당 해외 사업자는 자국에서 기타 행정집행의 역외적용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sup>18)</sup>

불법 저작물을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들은 구글, 메타 등과 같은 미국 사업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역외적용을 하게 될 경우 한미FTA 통상법규의 위배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외사업자에게 저작권법상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 것은 해석론으로서는 부정적인 실정이다.<sup>19)</sup>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해외 OSP의 불법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접속차단 조치는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

3월호, 2018.

17) 오승중,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21권 제2호, 2020, 9면.

18) 오승중, 위의 논문, 29면.

19) 오승중, 위의 논문, 29면.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평균 1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어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sup>20)</sup> 유사 또는 대체사이트를 통하여 다시 게재될 수 있고,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 때문에 용이하게 접속차단 사이트를 우회하여 다른 방법으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내 OSP에 대해서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에 비해 해외 OSP에 대한 조치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sup>21)</sup> 따라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최근에는 ‘실시간 차단(live blocking)’과 새로운 유형의 금지명령인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이 등장하게 되었다.<sup>22)</sup>

실시간 차단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침해물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호스팅하는 서버에 대해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모색적 금지명령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주된 도메인 이름과 불법복제 웹사이트의 IP주소뿐만 아니라 그 웹사이트가 이동하는 이후의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권리자에게 허용하는 제도이다.<sup>23)</sup>

---

20)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86> (2024. 12. 30. 최종 접속)

21) 오승중, 앞의 논문, 10면.

22) 이규호, “지식재산법의 역외적용”,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2022, 266면.

23) 이규호, 위의 논문, 266면.

## 나. 해외 OSP에 대한 주요나라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조치 현황<sup>24)</sup>

### 1) 서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최근에는 ‘실시간 차단 (live blocking)’과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이 시행되고 있다. 실시간 차단은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모색적 금지명령은 호주,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sup>25)</sup> 해외 OSP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의 대응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미국

#### 가)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쟁점<sup>26)</sup>

##### (1)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sup>27)</sup>에 따른 접속차단조치

미국 DMCA는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에 관한 벌칙규정을 도입하였다.<sup>28)</sup>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우회하고자 시도한 기술과 장치, 서비스의 제조 및 유통을 형사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역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외국의 지사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

24) 이규호, 앞의 논문, 119면.

25) 이규호, 위의 논문, 119면.

26) 이규호, “지식재산법의 역외적용”,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2022. 6., 256-260면.

27) 이하 “DMCA”라 한다.

28) 17 U.S. Code § 512 - 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해외에서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설립지가 미국인 회사에 대해 역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sup>29)</sup>

## (2) 해외 사이트 차단조치의 역외적 적용 여부에 대한 미국의 사례

미국 밖에 소재하는 웹서버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콘텐츠를 호스트하는 경우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쟁점은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거리를 제공한 주제이었다. 미국 콜롬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이 선고한 Spanski Enterprises v. Telewizja Polska 사건<sup>30)</sup>은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미국내 공연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비디오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행위와 미국내 시청자의 요청시 그 시청자들에게 해당 비디오콘텐츠를 전달하는 행위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Telewizja Polska (이하 'Polska')은 폴란드내에서 여러 TV채널을 위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관리하며 창작하는 폴란드내 국영 TV방송사다. Polska와 Spanski Enterprises (이하 'Spanski')(캐나다 기업)는 북미와 남미에서 TVP Polonia(Polska의 TV채널 중 하나)에 대한 배타적인 방송권을 Spanski에게 부여하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다. Polska는 폴란드에 기반을 둔 웹사이트에 VOD를 통하여 자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접속을 허용하고 있고 Spanski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Polska는 북미와 남미의 IP 주소로부터 저작물성이 있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

29) Internet Society, "The Internet and Extra-Territorial Effects of Laws", <https://www.internetsociety.org/resources/doc/2018/the-internet-and-extra-territorial-effects-of-laws/> (last visit on Nov 5, 2024).

30) 883 F.3d 904 (2018).

막기 위하여 지역맞춤형 차단기술(geoblocking technology)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시청제한은 에피소프의 디지털 비디오 포맷에 통합되었거나 콘텐츠관리체계를 통해 배정되었다.<sup>31)</sup>

하지만, 2011년 말에 Spanski측 변호사는 51회분의 드라마가 지역별로 적절히 차단되지 않아 북미 이용자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Polska의 웹사이트에서 시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Spanski는 미국법에 따라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sup>32)</sup> 콜롬비아특별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드라마 회별 방영분(episode)의 지역적 제한을 제거하고 각 회분의 지역차단설정이 되지 않은 디지털 포맷을 작성함에 있어서 직원의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 Polska가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쟁점이 된 에피소드는 미국내에서 시청되었기 때문에 침해가 전적으로 역외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Polska의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침해로 인하여 에피소드당 60,000달러의 법정손해배상액(총 3,060,000달러)을 허여하였다.

Polska는 완전히 자동화된 VOD 서비스의 최종이용자만이 저작권침해 책임을 지고 해당 서비스를 해외에서 호스트하는 당사자는 저작권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Polska는 해당 행위가 폴란드에서 전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허용될 수 없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역외적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시에 콜롬비아특별구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Polska가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의 선례인 American

---

31)

<https://www.jdsupra.com/legalnews/copyright-s-long-arm-foreign-website-40842/> (last visit on November 19, 2024).

32) Spanski Enterprises, Inc. v. Telewizja Polska S.A., 222 F.Supp.3d 95, 105 (D.D.C. 2016).

Broadcasting Companies v. Aereo사건에 의존하였다.<sup>33)</sup> 이 사건에서 Aereo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동안 사실상 인터넷을 통해 유료구독자에게 TV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Aereo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용허락을 받지도 않았다. 고객들은 시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었고 Aereo는 관련 방송국에 안테나를 맞추어 방송신호를 포착하여 그 방송신호를 수요 고객에게 재전송하였다. 연방대법원은 Aereo의 활동이 케이블 TV방송사의 활동-연방의 회가 구체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전송규정(연방법률 제17편 제101조)에서 규정한 행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Aereo가 그 프로그램을 공연하거나 전송하였다고 실시하였다. Aereo가 각 이용자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본을 전송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그 행위는 동일한 저작물을 공연한 것이고 그 구독자들은 공중에 해당한다. 이 연방대법원 판결은 전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도적인 행위 (volitional conduct)'라는 명확한 기준에 대한 예외를 확립하였다. Aereo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에게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독자적으로 전송할 것에 대하여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Aereo 테스트를 언제 적용할 것인지의 쟁점에 대하여 침묵하였고 Aereo 판결을 케이블 TV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로 해석한 이가 많았다.

Spanski 사건의 분쟁에서 콜롬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Aereo 사건판결을 매우 협의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선례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법원칙에 주목하였다. 침해하는 TV프로그램을 시청하기로 한 시청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사가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을 보여주고 프로그램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할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Aereo 원칙은 Spanski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Spanski 사건담당 연방항

---

33) 134 S.Ct. 2498 (2014).

소법원은 판시하였다. Polska (해당 방송사)와 시청자 양자는 동일한 공연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용자의 요청 시에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하여 Aereo가 비차별적으로 재전송하는 행위가 Aereo에 의한 공연권 침해를 초래하였던 경우에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저작물성있는 에피소드를 Polska가 전송하는 행위는 특히 해당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데 있어 Polska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비추어보아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설시하였다.

이 판결로부터 초래되는 광범위한 책임의 가능성에 대응하여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저작권법 제512조[소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면책조항(safe harbors)]과 같은 법적 보호 조항에 주목하여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의도적인 행위 또는 근인(近因)(promixate cause)을 해석함에 있어 다른 법원의 선례를 따르길 거부하였다. Aereo 사건판결이 판시한 요건의 범위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Polska의 행위는 미국 내 Spanski의 배타적인 권리-아이러니하게도 이 권리를 Polska로부터 이용허락받은 권리임-를 위반하여 미국법상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Spanski 사건 담당 연방항소법원은 판시하였다.

역외적용의 쟁점을 다룸에 있어 Spanski 사건은 RJR Nabisco, Inc. v. European Community사건<sup>34)</sup>에서 확립된 기준을 고찰하였다. RJR Nabisco 사건에서는 “법의 초점에 관련된 행위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그 밖의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건에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연방저작권법의 ‘초점(focus)’을 판단하기 위하여 RJR Nabisco사건은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n Bank Ltd.사건<sup>35)</sup>에서 연방대법원이 취한 접근방식을 따랐다. Morrison

34) 136 S.Ct. 2090 (2016).

35) 561 US 247, 130 S. Ct. 2869, 177 L. Ed. 2d 535 (2010).

사건에서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초점은 보장하는 권리의 배타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Polska가 폴란드에서 에피소드를 업로드하고 디지털포맷화하였지만 공연권 침해( 및 관련 행위)는 미국내 컴퓨터 스크린상에 발생하였고 미국 내에서 제소할 수 있다. 달리 판시하였다면 단지 미국 밖에 자사의 서버를 소재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의 저작권침해범죄가 미국 저작권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연방저작권법은 공연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미국으로 전송하는 외국 방송사에 대하여 미국 국내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집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의 Spanski 사건은 침해콘텐츠가 중국적으로는 미국으로 전송되어 시청된다면 외국 서버에 침해 콘텐츠를 저장하는 행위는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을 반드시 면제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지만, 미국 IP 주소의 차단이 Polska와 같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책임으로부터 면책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은 이 사건에서 다루지 아니하였다. 지역별 차단조치는 침해를 회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미국 저작권법상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외국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최상의 실무관행일 수 있다.<sup>36)</sup>

Polska는 의도적으로 지역별 차단조치를 중지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외국 웹사이트 운영자의 지역적 제한(콘텐츠를 국내에서 시청하도록 하는 조치)을 회피하는 미국 이용자에 대한 가정을 제출하였다. Spanski 사건 담당 연방항소법원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미리 판단하길 거부하였으나 그러한 상황에 외국 웹 운영자가 대인관할권의 부재 처럼 책임에 대한 대체적인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고 실시하였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

36)

<https://www.jdsupra.com/legalnews/copyright-s-long-arm-foreign-website-40842/> (last visit on November 19, 2024).

Triple Up Limited v. Youku Tudou Inc.사건<sup>37)</sup>과 Carsey-Werner Company, LLC v. BBC 사건 판결<sup>38)</sup>이 지지하였다. 이들 판결은 웹사이트의 적극적인 지역별 차단(geoblocking) 노력에 의존하여 ‘대인관할권의 부재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제 시도

### (1) Protect IP Act<sup>39)</sup> 및 Stop Online Piracy Act<sup>40)</sup>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에 PIPA 및 SOPA 두 개의 법안이 상정되었다. PIPA는 2011년 5월 발의되었으며,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집행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SOPA 법안은 2011년 10월 상정되어 저작권 침해 및 위조상품 유통에 기여하는 웹사이트들에 대해 미국 내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두 법안은 저작권자가 위법하게 유통되는 자신의 콘텐츠들을 발견한 경우 웹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SP나 검색 엔진, 인터넷 광고서비스제공자나 결제시스템 사업자 등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즉, OSP에게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거나, 포털사이트에 해당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도록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온라인상 불

---

37) 235 F.Supp.3d 15 (2017).

38) Case No. CV 17-8041 PA (ASx)(C.D.Cal.)(Feb. 23, 2018).

39) 이하 “PIPA”라 한다.

40) 이하 “SOPA”라 한다.

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sup>41)</sup>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해 인터넷기업들은 이 법안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인터넷 상에서 불법이 아닌 콘텐츠 유통까지 통제될 수 있고 자칫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닫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같은 여론이 있었다. 결국 두 법안은 입법이 무산되었다.

## (2) Onlin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Digital Trade Act<sup>42)</sup>

OPEN Act는 2011년 12월에 PIPA와 SOPA 법안을 대체하여 제안된 것으로,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라 한다)가 수사하여 불법사이트 여부를 판단한 후 사이트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다. ITC는 법원이 아닌 독립 행정기관임에 따라서 PIPA나 SOPA에 비하여 더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OPEN Act에 따르면, 권리자들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이트들에 대하여 ITC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OPEN Act에서 정하는 ‘저작권 침해 인터넷사이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미국이 아닌 도메인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이트가 운영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사이트 소유자나 운영자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하여야 한다.

OPEN Act 법안에 따르면, 불법사이트로 판명되는 경우 ITC는 사이트 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데,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국 법무부를 통하여 가처분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ITC는 즉각적인 조치가

---

4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GLOBAL COPYRIGHT PROTECTION」, vol.8, 2012, 10면.

42) 이하 “OPEN Act”라 한다.

필요한 경우 예비적인 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ITC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미국 연방대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PEN Act**

S.2029 – 112th Congress (2011-2012)

“SEC. 337A. Unfair trade practices relating to infringement of copyrights and trademarks by certain Internet sites.

“(a) Definitions.—In this section:

“(8) INTERNET SITE DEDICATED TO INFRINGING ACTIVITY.—

“(A) IN GENERAL.—The term ‘Internet site dedicated to infringing activity’ means an Internet site that—

“(i) is accessed through a nondomestic domain name;

“(ii) conducts business directed to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iii) has only limited purpose or use other than engaging in infringing activity and whose owner or operator primarily uses the site—

“(I) to willfully—

“(aa) infringe a copyright in a manner punishable under section 506 of title 17, United States Code; or

“(bb) violate section 1201 of title 17, United States Code; or

“(II) to use counterfeit marks in a manner punishable under section 34(d) of the Lanham Act (15 U.S.C. 1116(d)).

“(B) BUSINESS DIRECTED TO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n Internet site conducts business directed to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under subparagraph (A)(ii), the Commission may consider, among other indicators, whether—

“(i) the Internet site is providing goods or services to user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ii) there is evidence that the Internet site is not intended to provide goods and services to such users or access to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to such users;

“(iii) the Internet site has reasonable measures in place to prevent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Internet site from being accessed from or delivered to the United States;

“(iv) the Internet site offers services obtained in the United States; and

“(v) any prices for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Internet site are indicated in the currency of the United States.

“(C) EXCLUSIONS.—An Internet site is not an Internet site dedicated to infringing activity—

“(i) if the Internet site has a practice of expeditiously removing, or disabling access to, material that is claimed to be infringing or to be the subject of infringing activity after notification by the owner of the copyright or trademark alleged to be infringed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ii) because the Internet site engages in an activity that would not make the operator liable for monetary relief for infringing a copyright under section 512 of title 17, United States Code; or

“(iii) because of the distribution by the Internet site of copies that were made without infringing a copyright or trademark.

PIPA와 SOPA 법안과는 달리 OPEN Act는 도메인 자체를 차단하거나 검색 엔진을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과 투명하고 신속한 독립 행정기관인 ITC가 수사 및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 3) 유럽연합(EU)

#### 가) 유럽연합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sup>43)</sup> 및 유럽연합 집행지침<sup>44)</sup>

유럽연합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8조 제3항은 제3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 중개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최초의 법제이다. 이 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3자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가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 지침에 대한 해설조항(recital) 제59항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해설조항 제59항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다른 제재 및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권리자는 네트워크상에서 제3자에 의한 보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을 침해하는 중개자를 상대로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그러한 금지명령에 관한 조건 및 양식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맡겨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sup>45)</sup>

유럽연합 집행지침 제11조에서는 유럽연합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8조 제3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데에 사용되는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규정하기 위한 일반 요건을 도입하였다.<sup>46)</sup>

---

43)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44)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04] OJ L 157/5 (corrected version OJ L 195/16, 2 June 2004).

45) 이규호, 앞의 논문, 120면.

46) David Lindsay, "Website Blocking Injunction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s: Proportionality and Effectiveness", 40 (4) UNSW Law Journal 1507, 1514 (2017).

## 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sup>47)</sup>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Compositeurs et Éditeurs SCRL (SABAM) 사건<sup>48)</sup>과 UPC Telekabel Wien GmbH v. Constantin Film Verleih GmbH and Wega FilmproduktionsgesellschaftmbH 사건<sup>49)</sup>에서 유럽 연합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에 따른 접속차단명령의 비례성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 (1) Scarlet Extended 사건

이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 의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벨기에 법에 따른 금지명령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지침 (E-Commerce Directive) 제15조에 따른 감독의 금지와 모순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접속을 차단할 광범위한 의무가 저작권과 다른 기본권 사이의 공정한 비교형량이 확립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은 일반적이고 무제한적인 필터링이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

47) UPC Telekabel Wien GmbH v Constantin Film Verleih GmbH (C-314/12) [2014] Bus. L.R. 541 (27 March 2014).

48) C-70/10 [2011] ECR I-11959 ('Scarlet Extended').

49) ) C-314/12 [2014] Bus. L.R. 541 (27 March 2014) ('Telekabel').

## (2) Teleckabel 사건

이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특정 웹사이트(kino.to)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하는 접속차단명령의 비례성 원칙을 다루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접속차단명령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취할 조치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수단/목적 분석설에 입각한 비례성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실효성 기준(reasonable effectiveness standard)'을 채택하였다. 이에 저작권 침해의 완전한 중지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접속을 어렵게 하거나 인터넷 이용자들이 대상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심각하게 장려하는 경우에만 그 접속차단명령이 실효적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 4) 호주

### 가) 사이트 차단명령(Site blocking order)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 2015년 6월 도입되어 Roadshow Films Pty Ltd. v. Telstra Corporation Ltd 사건<sup>50)</sup>에서 2016년 12월에 최초의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제115A조에 따른 사이트 차단명령은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에 대한 금지명령이다. 이 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호주 밖의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0) [2016] FCA 1503.

**호주의 2018년 개정 이전 저작권법 제115A조**

(호주 국외 소재 온라인 위치에의 접근을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

115A Injunctions against carriage service providers providing access to online locations outside Australia

(1)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may, on application by the owner of a copyright, grant an injunc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2)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 (a) a carriage service provider provides access to an online location outside Australia; and
  - (b) the online location infringes, or facilitates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 and
- © the primary purpose of the online location is to infringe, or to facilitate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whether or not in Australia).

(2) The injunction is to require the carriage service provider to take reasonable steps to disable access to the online location.

(1) 호주 연방법원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국외 소재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사실
- (b) 해당 온라인 위치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다는 사실 및
- (c) 온라인 위치의 주된 목적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을 침해거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다는 사실

(2) 금지명령의 내용은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호주는 2018년 11월 28일 의회에서 승인된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하여 웹사이트 차단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전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웹사이트 및 우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용이하게 하

는 내용을 담았는데, (i) 법원의 금지명령 시 요건 완화를 통하여 접속 차단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ii) 금지명령의 대상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뿐만 아니라 온라인검색엔진제공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도록 허용하는 내용, (iii) 추가적인 금지명령 없이도 신규 또는 관련된 온라인 주소에 적용되도록 기존 금지명령을 준용할 수 있는 연방 법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호주의 2018년 저작권법 제115A조<sup>51)</sup>**

(호주 국외에 소재하는 온라인 위치와 관련된 금지명령)

**금지명령 신청**

(1) 국외 소재 온라인 위치(online location)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로서 합리적이라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저작권자는 연방법원에 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래 각 호의 조치를 금지하도록 연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a)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치 또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조치 및
- (b)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를 가져오거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을 주된 목적 또는 주된 효과로 하는 조치

(2) 이용자를 온라인 위치로 안내하는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법원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제8B항에 따른 선언에 의하여 포섭되는 제공자 제외)가 취하도록 하는 조치도 제1항의 청구에 포함할 수 있다.

**금지명령의 허여**

(2A) 법원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및 조건에 따라 금지명령을 허여할 수 있다.

주 1: 금지명령을 허여할 것인지 여부를 언제 판단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5항 참조.

주 2: 제1항에 따른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금지명령의 내용 및 조건은 제2항에 따른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에 적용되는 내용 및 조건과는 상이할 수 있다.

(2B) 제2A항을 제한하지 않고, 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하나 또는 양자를 할 합리적인 조치

를 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i) 금지명령에 특정된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도메인 이름, URL 및 IP주소를 차단하는 조치

(ii) 금지명령이 발령된 후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였던 도메인 이름, URL 및 IP주소로서 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도메인 이름, URL 및 IP주소를 차단하는 조치 및

(b)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에게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하나 또는 양자를 할 합리적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i)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금지명령에 특정된 도메인 이름, URL 및 IP주소를 포함하는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

(ii) 금지명령이 발령된 후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였던 도메인 이름, URL 및 IP주소로서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와 저작권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도메인 이름, URL 및 IP주소를 포함하는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 당사자

(3) 제1항에 따른 소송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저작권자 및

(b) 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ba)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인 경우에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 및

(c) 온라인 위치를 운영하는 자가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위치를 운영하는 자

#### 송달

(4) 저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인 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aa)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금지명령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인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 및

(b)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인 온라인 위치를 운영하는 자

저작권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위치를 운영하는 자의 신원 또는 주소를 판단할 수 없거나 그자에게 통지를 발송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보는 조건하에 제b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고려 요인

(5) 금지명령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a) 제1항 제b호에서 정하는 대로 침해의 악명 또는 침해 방조의 악명
- (b) 온라인 위치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디렉터리, 색인 또는 수단의 범주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포함하는지 여부
- (c) 온라인 위치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는지 여부
- (d)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법원 또는 다른 영의 법원이 발령하는 명령으로 불가능화되었는지 여부
- (e)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 비례적인 대응책인지 여부
- (ea)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금지명령도 구하는 경우에 온라인 위치로 이용자들을 안내하는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 비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f) 금지명령의 허용으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자 또는 부류에 대한 영향
- (g)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 (ga)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금지명령도 구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위치로 이용자들을 안내하는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 (h) 저작권자가 제4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i) 이 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구제책
- (j) 규칙에서 정하는 그 밖의 사항
- (k) 그 밖의 관련 사항

### 온라인 위치가 국외에 소재한다는 추정

(5A) 절차의 목적상 온라인 위치는 반대증거가 없는 한, 국외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선서진술서 증거

(6) 절차의 목적상 제134A조(선서진술서 증거)와 관련하여 특정 행위에 대한 제134조 제f항이 일련의 행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금지명령의 취소 및 변경

(7)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행할 수 있다.

(a) 이 조에 따라 부여된 금지명령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 또는

(b) 당사자의 신청 시에 이 조에 따라 부여된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조치

(8) 제7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기할 수 있다.

(a)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 또는

(b) 규칙에서 정하는 그 밖의 자

(8A) 제7항에 따른 신청은 제8B항에 따른 선언에서 포섭하는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금지명령을 변경하도록 법원에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를 제외하는 선언

(8B) 통신·사이버안전·예술 장관은 행정입법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선언할 수 있다.

(a) 특정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 또는

(b) 특정 군의 회원인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청에 특정되지 않아

야 한다.

### 비용

(9) 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검색엔진제공자(적용가능한 경우에만)는 해당 제공자가 변론에 출석하여 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에 관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1) Article 115A (Injunctions relating to online locations outside Australia) of Australian Copyright Act 1968, No. 63, 1968, revised by Act No. 157, 2018.

## 나) 모색적 금지명령

2023년 6월 2일 Netflix, Disney, Columbia, Paramount, Universal, Warner Bros, Village Roadshow 등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호주 연방법원에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22개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 사이트와 36개의 도메인에 대해 차단 명령을 내려줄 것을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에 따라 요청한 사례가 있다. 이에 2023년 7월 7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연방지방법원은 신속하게 차단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49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 IP 주소 또는 URL에 대해 접속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명령은 모색적 금지명령으로 차단을 우회하기 위한 대체 도메인, URL 또는 IP 주소도 동일하게 금지 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차단 명령의 효과는 3년간 유지되며 3년 이후에도 ‘주된 목적 또는 효과’가 있을 경우(have the primary purpose or the primary effect) 3년 연장할 수 있다.<sup>52)</sup>

## 5) 영국

2017년 영국에서는 법원이 영국의 6대 소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실시간 차단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 The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Limited v.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and others 사건<sup>53)</sup>은 이용자의 인터페이스에 침해물을 공중송신하기 위해 이

---

52) TF, “Movie Studios Win Australian Piracy Blocking Injunction in Record Time”, July 11, 2023 by Andy Maxwell, <https://torrentfreak.com/movie-studios-win-australian-piracy-blocking-injunction-in-record-time-230711/> (last visit on Nov 15, 2024).

53) FAPL v BT [2017] EWHC 480 (Ch).

용되는 스트리밍 서버에 대해 실시간 차단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이다. 이 실시간 차단 명령은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생중계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해당 시즌기간에만 적용되었다.

고등법원은 영국 저작권법 제97조의A에 따라 사이트제공자가 그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하는 데에 사용하는 제3자의 침해행위를 현실로 알고 있는 경우 그 사이트제공자에 대해 금지명령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97A(Injunctions against service providers)

(1) The High Court (in Scotland, the Court of Session) shall have power to grant an injunction against a service provider, where that service provider has actual knowledge of another person using their service to infringe copyright.

(2) In determining whether a service provider has actual knowledge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a court shall take into account all matters which appear to it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to be relevant and, amongst other things, shall have regard to—

(a) whether a service provider has received a notice through a means of contact made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6(1)(c) of the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SI 2002/2013); and

(b) the extent to which any notice includes—

- (i) the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sender of the notice;
- (ii) details of the infringement in question.

(3) In this section “ service provider ” has the meaning given to it by regulation 2 of the Electronic Commerce (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 제97A조(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

(1) 고등법원(스코틀랜드의 항소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

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2) 서비스 제공자가 이 조의 목적상, 실질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다음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2002년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SI 2002/2013)의 제6(1)(C)항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진 연락 수단을 통해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b) 통지가 다음 내용을 포함되는 정도-

(i) 통지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

(ii) 당해 침해의 구체적 내용.

(3) 이 조에서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2002년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제2항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 6) 싱가포르

2018년 싱가포르의 Disney Enterprises, Inc. and others v. M1 Limited and others 사건(이하, “Disney Enterprises 사건”이라 한다)에서는 디즈니와 그 밖의 주요 영화사 5곳이 싱가포르 내에서 주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5곳을 상대로 웹사이트 차단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에서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최초로 웹사이트 접근금지를 명하는 모색적 금지명령을 발하였다. 이 금지명령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주된 금지명령의 대상인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새로운 도메인 이름, URL 및 IP주소를 차단하도록 하였다.<sup>54)</sup>

2020년 7월, 싱가포르 법원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디스커버리, BBC, 라리가 및 TVB의 저작물을 포함하여 노골적으로 불법복제하는 15곳의 온라인 위치에 대한 모색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호주, 유럽연합, 인도 및

---

54) Disney Enterprises, Inc. and others v. M1 Limited and others [2018] SGHC 206.

영국과 더불어 싱가포르의 모색적 금지명령 체계의 진화 및 싱가포르 법원의 신중한 명령 발령은 웹사이트 차단과 관련된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다른 국가에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제적인 법리의 발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싱가포르 법원에 영향을 끼쳤다. 초기의 사례에서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영국 법원이 취하는 접근방식에 의존하였다.<sup>55)</sup>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하거나 비례성 있는 조치로서 접속차단조치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수단/목적 분석론(means/ends analysis)’을 채택하였다. 수단/목적 분석론은 접속차단조치에 대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하거나 비례성이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

## 7) 스페인

2020년 2월, 스페인 방송사인 Telefónica Audiovisual Digital(라리가에 대한 권리를 가진 방송사)와 라리가 리그 경기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플랫폼인 Movistar Plus(모비스타 플러스)가 ISP들에게 44개의 불법 복제 사이트와 서비스를 식별하여 URL,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를 차단하는 데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신청한 것에 대하여 스페인 마드리드 상사법원은 모색적 차단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모색적 차단금지명령은 2022년 5월 25일까지 유효하며 3개의 축구 시즌을 포함하도록 설정되었다.<sup>56)</sup>

---

55) Twentieth Century Fox v. British Telecommunication, Plc [2011] EWHC 1981 (Ch) (28 July 2011); Cartier International v. British Sky Broadcasting Ltd., [2014] EWHC 3354 (Ch).

56) Bill Toulas, “Spanish ISPs Will Block Pirate Sites Using a Dynamically Updated Blocklist”, Tech Nadu February 20, 2020, <<https://www.technadu.com/spanish-isps-block-piratesites-dynamically-updated-blocklist/93321/>>, (last visit on Nov 15, 2024).

## 8) 멕시코

2019년 2월 멕시코의 산업재산청(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은 불법복제 사이트인 Rojadirecta를 차단하기 위하여 라리가의 권리자에게 멕시코 사상 최초로 모색적 금지명령을 실행하였다. 이 명령은 해당 시즌 동안에만 적용되고 시합이 방송된 날에 한해 적용되었다.<sup>57)</sup>

## 9) 스웨덴

2019년 12월에 스웨덴의 특허 및 시장 법원(Patent and Market Court)은 모색적 금지명령을 최초로 발령하였다.<sup>58)</sup> 불법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색인화된 도메인 이름과 웹 주소뿐만 아니라 3년간 불법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도메인 이름과 웹사이트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sup>59)</sup>

---

57) Jaime Rodriguez and Abraham Díaz, “Dynamic injunctions in the digital environment”, World IP Review 24-04-2020, <<https://www.worldipreview.com/contributed-article/dynamic-injunctions-in-the-digital-environment>>, (last visit on Nov 15, 2024).

58) §53 B (first sentence) of the Swedish Act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60:729).

59) Hans Eriksson, “Dynamic blocking injunction confirmed by Swedish Patent and Market Court of Appeal”, Kluwer Copyright Blog, <<http://copyrightblog.kluweriplaw.com/2020/07/20/dynamic-blocking-injunction-confirmed-by-swedish-patent-and-market-court-of-appeal/>>, (last visit on Nov 15, 2024)

## 10)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EU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8조 제3항을 반영하여 모색적 금지명령을 규정하였다.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81조 제1a항은 ‘오스트리아 이외의 온라인 로케이션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sup>60)</sup> 이 조문에 따르면, 금지명령은 사이트제공자가 그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무효로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 11) 인도

2023년 인도 Applause Entertainment Pvt. Ltd. v. Meta Platforms Inc. 사건<sup>61)</sup>에서 뭄바이 고등법원은 OTT 플랫폼 Sony Liv에서 독점적으로 스트리밍되는 OTT 시리즈 “Scam 1992: The Harshad Mehta Story”(이하 “웹시리즈”라 한다)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Applause Entertainment Pvt. Ltd.)에게 32개의 인스타그램(Instagram) 계정에 대해 모색적 금지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플랫폼에서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계정 소유자의 연락처, 세부 정보, IP 주소 및 실제 위치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모색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사한 웹사이트와 플랫폼에 대한 명령이 연장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sup>62)</sup>

---

60) § 81(1a) UrhG.

61) Applause Entertainment Pvt. Ltd. v. Meta Platforms Inc., 2023 SCC Online Born 1034)

62) SC IP, “APPLAUSE ENTERTAINMENTPRIVATE LIMITED VS.META PLATFORMS INC. AND OTHER”, May 12, 2023.

Shttps://www.sc-ip.in/post/applause-entertainmentprivate-limited-vs-meta-platforms-inc-and-others (last visit on Nov 17, 2024)

이후 Sony Pictures Animaion Inc. V. FLIXHD.CC/&Ors. 사건<sup>63)</sup>에서 원고는 자신에게 독점권이 있는 영화 “SpiderMan: Across The Spider-Verse”에 대해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허가없이 배포, 스트리밍 또는 판매될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ISP가 그러한 웹사이트에 대해 접근을 차단해야 함을 요청하였다. 이에 델리고등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불법으로 방송, 스트리밍, 업로드하는 웹사이트는 불법 웹사이트로 분류되며,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다양한 판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사전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아직 영화가 개봉되기 전임에도 피고 웹사이트에 대하여 ISP가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통신서비스 제공업체(the telecom service providers)에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불법 웹사이트에 대하여 임시 금지 및 기타 금지명령 구제 조치를 내렸다.<sup>64)</sup>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차단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12) 아르헨티나

2022년 6월 27일 아르헨티나의 방송국과 스페인 축구 연맹 등 등은 연방 민·상사 법원(Poder Judicial de la Nación JUZGADO CIVIL Y COMERCIAL FEDERAL)에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30개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방

---

63) Sony Pictures Animaion Inc. V. FLIXHD.CC/&Ors., 2023 LiveLaw(Del) 471.

64) King Stubb&Kasiva, “SONY Pictures Animation INC v. FLIXHD.CC/ & ORS., CS(COMM) 366/2023 & I.A. 10681/2023, I.A. 10682/2023, I.A. 10683/2023”, June 28, 2023, <https://ksandk.com/newsletter/sony-pictures-animation-inc-v-flixhd-cc/> (last visit on Nov 17, 2024)

민·상사 법원은 2022년 12월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한 것을 명하는 모색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르헨티나 법원의 모색적 금지명령은 ISP들로 하여금 문제되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의 IP주소와 도메인 네임, 나아가 이후의 대체 사이트와 새로운 도메인 네임까지도 차단할 수 있도록 명령에 포함되었다.<sup>65)</sup>

#### 다. 해외 OSP를 포함하는 모색적 금지명령 조문 설계(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3조의2 개정안 제시)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의 행정적 차단조치는 역외적 적용을 구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영국, 싱가포르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색적 금지처분(dynamic injunction) 및 실시간 차단조치의 적극적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은 제5조의2에서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는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적 차단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

---

65) Ernesto Van der Sar, “Copyright Holders Score ‘Dynamic’ Pirate Site Blocking Order in Argentina”, March 6, 2023, <https://torrentfreak.com/copyright-holders-score-dynamic-pirate-site-blocking-order-in-argentina-230207/> (last visit on Nov 15, 2024)

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10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원은 도관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0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캐싱서비스 제공자, 저장서비스 제공자 및 검색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및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3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조문의 성격상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외 소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를 참조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면 다음과 같다.

#### 저작권법 개정안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1. 12. 2.]

③ 국외에 소재하는 불법복제물의 주된 목적 또는 주된 효과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123조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도메인이름, 인터넷주소 위치지정자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또는 이용자를 그 불법복제물로 안내하는 검색결과의 제공을 막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sup>66)</sup>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효과이론에 따라서 저작권법 개정안 제103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국외 소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이 조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의 주된 목적 및 주된 효과가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서 접속차단조치와 비색인화 조치 둘 다 허용하고 소송계속중 명령의 범위 변경 및 취소를 인정하여 모색적 금지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6) 이 항의 용어 중 “불법복제물”은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의 “online locations”를 번역한 것이고, “인터넷주소 위치지정자”는 “uniform resource locator”를 번역한 것이다.

## 2. CDN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의 법적 근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sup>67)</sup> 분석을 통하여 CDN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자 한다.

### 가. 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분석

#### 1) 미국의 사례

##### 가) CDN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줄 의무를 부담한 사건<sup>68)</sup>

#### (1) 사실관계

원고 Elsevier는 과학 분야의 논문을 제공하는 대형 저널사이트이자 논문들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피고 사이트는 Sci-Hub로 러시아의 과학 분야 저널사이트이다. 피고 사이트에서 기타 유료 저널사이트의 학술지를 무료로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도서 불법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2015년 저작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불법 공유사이트 Sci-Hub는 세계 각국의 도서관 IP주소를 모방하거나 익명의 IP주소를 이용하여 원고 사이트 등 유료 저널사이트에 접속한 후 논문을 다운로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CDN 업

---

67) 김동원, “불법사이트의 효과적 제재를 위한 현행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제4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발표자료, 2024. 8. 28, 29-31면 참조.

68) Elsevier Inc. v. WWW.SCI-HUB.ORG, No. 15-cv-4282 (S.D.N.Y. Oct. 20, 2016).

체를 활용함에 따라서 운영자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년 9월 법원의 증거개시 소환 명령(court-ordered discovery subpoena)이 피고의 신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CDN 업체로부터 피고의 운영자 신원을 확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 (2) 쟁점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CDN 사업자에게 불법 사이트 운영자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3자 소환(third party subpoena)’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 (3) 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

법원은 2016년 10월 20일에 CDN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운영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CDN 사업자에 대한 제3자 소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CDN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에 대해 기록을 제공하여야 했다.<sup>69)</sup>

이 사건은 불법 침해 사이트인 피고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아니더라도

---

69) Kieren McCarthy,

Cloudflare ordered by judge to help unmask two website owners“, Oct 31, 2016, [https://www.theregister.com/2016/10/31/cloudflare\\_ordered\\_by\\_judge\\_to\\_reveal\\_customers/](https://www.theregister.com/2016/10/31/cloudflare_ordered_by_judge_to_reveal_customers/) (last visit on Nov 17, 2024)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CDN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나) 호스팅 업체의 책임에 대해 다룬 사건<sup>70)</sup>

### (1) 사실관계

원고 영화사들(Millennium Funding, Inc., LHF Productions, Inc. 등)은 2021년 5월 클라우드 호스팅 및 DDos 보호제공 업체인 샤크텍(Sharktech, Inc.), 그 대표자인 Tim Mouhieddine Timrawi를 상대로 콜로라도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VPN 제공 업체들은 샤크텍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샤크텍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피고 샤크텍은 주요 고객인 VPN 제공업체들이 샤크텍 서버에서 VPN 네트워크를 호스팅할 수 있도록 서버를 임대하고 IP주소를 제공해 왔다.

### (2) 쟁점

피고의 주요 고객인 VPN 제공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 해적행위를 하는 데 피고에게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 책임, 대위 책임 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70) Millennium Funding, Inc. v. Sharktech, Inc., 1:21-cv-01261, (D. Colo.).

### (3) DMCA의 면책조항

DMCA에는 단순히 접속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ISP의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ISP가 침해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침해를 반복적으로 하는 자들에 대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 및 적용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sup>71)</sup>

#### 17.U.S.C. § 512(i)(1)(A)

(i) Conditions for Eligibility.—

(1) Accommodation of technology.—The limitations on liability established by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 service provider only if the service provider—

(A) has adopted and reasonably implemented, and informs subscribers and account holders of the servic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of, a policy that provides for the termination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of subscribers and account holders of the service provider’s system or network who are repeat infringers;

### (4) 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

2021년 10월 원고와 피고는 합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피고 샤크텍은 서버를 통해 특정 유명 해적사이트(YTS, Pirate Bay, RarBG, 1337X 등)에 대한 접속 차단 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

71) 17.U.S.C. § 512(i)(1)(A).

미국에서 이때까지 해적사이트 차단이 흔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승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외 VPN 및 호스팅 업체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최근에 나타난 소송 방식이며, 아직까지는 이러한 소송 대부분이 합의로 마무리되고 있는 추세이다.<sup>72)</sup>

## 다) Cloudflar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 (1) ALS Scan, Inc. v. Cloudflare, Inc. 사건<sup>73)</sup>

2017년 사진을 제작하고 마케팅하는 사업자 ALS Scan은 자신의 사진 저작물들을 침해하고 있는 13개의 웹사이트에 대해 Cloudflare가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기여책임(contributory infringement)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ALS Scan은 해적사이트들이 Cloudflare의 CDN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트 이용자들이 빠르게 콘텐츠를 제공받고 있으며, 해적 사이트가 자신의 신원을 숨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적 사이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Cloudflare는 대다수의 해적사이트가 해외에 있고, 그들의 행위는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LS Scan과 Cloudflare는 2018년 6월 합의하여 소송을 종료하였다.

---

72) 김형지, “사이트 차단으로 합의 종결한 호스팅 업체 샤크텍 저작권 침해 사건과 미국의 관련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 8면.

73) ALS Scan, Inc. v. Cloudflare, Inc. et al.

## (2) Mon Cheri Bridals, LLC v. Cloudflare, Inc. 사건<sup>74)</sup>

2021년 원고인 웨딩 드레스 제조 및 도매 업체 Mon Cheri Bridals 와 Maggie Sottero Designs는 Cloudflare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Cloudflare가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 웹사이트에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적용하여 만든 웨딩드레스를 판매한다는 이유이다. 원고는 침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웹사이트를 폐쇄시키기도 하였지만, 계속하여 새로운 웹사이트가 등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침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체인 Cloudflar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Cloudflare가 침해자에게 캐싱, 콘텐츠 전송 및 보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Cloudflare의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제공한 서비스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sup>75)</sup>

## 2) 유럽의 사례

### 가) 독일의 사례<sup>76)</sup>

#### (1) 사실관계

---

74) Mon Cheri Bridals, LLC v. Cloudflare, Inc., 19-cv-01356-VC.

75) Blake Brittain, "Cloudflare escapes copyright claims from wedding-dress sellers", Oct 8, 2021, <https://www.reuters.com/legal/transactional/cloudflare-escapes-copyright-claims-wedding-dress-sellers-2021-10-07/> (last visit on Nov 17, 2024)

76) OLG Köln, 03. 11. 2023 - 6U149/22.

음반제작자인 원고는 자신이 배타적 이용권을 가지는 음악가 D의 앨범 파일이 ddl-music.to라는 불법 사이트 상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위 사이트의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Cloudflare에게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Cloudflare는 8개월이 지나서야 차단하였고, 해당 사이트는 2021년 말부터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장래 ddl-music.to사이트가 온라인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Cloudflare에 장래의 침해를 방지할 예방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 (2) 쟁점

피고에게도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행위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3) 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

유튜브 등 플랫폼운영자의 행위자책임을 인정한 2021년 6월 22일자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공중전달권<sup>77)</sup>과 관련하여 침해의 간접 야기자 및 공동 야기자에 대한 행위자책임 성립요건은 ‘중심적 역할’과 ‘행위의 고의성’이다.

퀵른 고등법원(항소심)은 2023년 11월 3일에 위 판례의 법리를 피고의 CDN 서비스에 적용하여 판단하였고, ddl-music.to 사이트 운영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링크 접근

---

77) 독일 저작권법 제15조 제3항에서 이행한 지침 2001/29/EC 제3조.

은 피고의 CDN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였다. 이에 법원은 Cloudflare의 CDN 서비스에 대해 공중 전달로 인한 침해예방청구권을 확정하였다.

## 나) 이탈리아의 사례

### (1) CDN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서비스 차단 명령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 사안<sup>78)</sup>

#### (가) 사실관계

원고인 TV 플랫폼 ‘Sky Italy’와 이탈리아 축구 리그 ‘Lega Serie A’는 밀라노 법원에 CDN 업체 Cloudflare 등을 상대로 해적 IPTV 서비스인 “IPTV THE BEST”에 대한 액세스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피고 Cloudflare는 침해 콘텐츠를 직접 호스팅하지 않고, 단순히 콘텐츠를 캐시에 저장하고 트래픽을 전달할 뿐이라고 항변하였다.

#### (나) 쟁점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과정에서 CDN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서비스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78) l’ordinanza (n. 42163/20) emessa del Tribunale di Milano (Sezione Impresa in data 5 Ottobre).

## (다) 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

밀라노 법원은 호스팅을 하든 캐시를 제공하든 상관없이 CDN 업체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보고, 2020년 10월 5일에 최초로 CDN 업체에 대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콘텐츠를 무단 전송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CDN 서비스 제공을 즉시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공자와 같은 단순 도관(conduits)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 또는 행정기관이 가진다’리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밀라노 법원의 금지명령은 저작권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CDN 업체 또는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 (2) DNS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 콘텐츠 유통을 돕는 사이트에 대해 차단할 의무가 있는지 다룬 사안<sup>79)</sup>

### (가) 사실관계

피신청인 CloudFlare은 미국에 본사를 둔 DNS(Domain Name System)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Sony Music Entertainment Italy s.p.a., Warner Music Italia s.r.l., Universal Music Italia s.r.l. 등 대형 음반사들은 CloudFlare가 제공하는 DNS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불법 복제 음원이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용이하게 접근하게

---

79) Sony Music Entertainment Italy s.p.a., Warner Music Italia s.r.l., Universal Music Italia s.r.l. v. CloudFlare Inc.

한다고 하여 밀라노 법원에 불법복제 음원이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 3 곳<sup>80)</sup>에 대한 차단 명령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sup>81)</sup>

CloudFlare의 DNS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탈리아 국적의 업체들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인 AGCom(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은 2021년 3 차례에 걸쳐 신청된 사안에 대해 해당 토렌트 사이트의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불법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AGCom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던 미국 국적 회사인 CloudFlare의 DNS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차단을 우회할 수 있었다. 이에 신청인들은 CloudFlare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 (나) 쟁점

이 사안에서 법원은 CloudFlare와 같은 DNS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 콘텐츠 유통을 돕는 사이트에 대해 차단할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되었다.

## (다) 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

2022년 7월 11일 밀라노 법원은 CloudFlare의 DNS 서비스가 이용자들이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보아 음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차단 조치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거나 어렵게 할 수 있는

---

80) kickasstorrents.to, limetorrents.pro, ilcorsaronero.pro.

81) AVVOCATO “UMBERTO DAVID, Tutela del diritto d'autore provider di servizi e piattaforme on line”,  
.https://www.umbertodavide.it/tutela-del-diritto-dautore-provider-di-servizi-e-piattaforme-on-line/ (last visited: on Dec 16, 2024)

효과가 있기 때문에 CloudFlare가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CloudFlare는 DNS 서비스에 대한 법원의 차단명령에 대해 이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항고하였으나, 2022년 11월 9일 밀라노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였다.

### **3) 일본의 사례**

#### **가) 사례 1**

##### **(1) 사실관계**

원고의 허락 없이 촬영한 인물 사진과 기사가 B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었다. 원고는 위 행위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B 사이트에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Cloudflare에 대해 기사 데이터 삭제 및 원본 보관서버의 정보공시를 요구하였다. Cloudflare는 B 사이트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서버에 보존하고, B 사이트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열람시키고 있으나, 'CDN 서비스 이용 고객인 B 사이트의 정보 자체를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2) 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

법원은 2018. 10. 9. 권리 침해 정보를 직접 발신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중개한 자도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Cloudflare에 대해 초상

권 등을 침해하는 기사 데이터 삭제 및 발신자 정보 공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위 판단은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만 (i) CDN 업체는 Cloudflare 외에도 다수 존재하고, (ii)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가 가명으로 계약 체결 시 정보공시의 의미가 없으며, (iii)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외국 거주 사이트 운영 정지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 나) 사례 2

### (1) 사실관계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일러스트를 C 정보 사이트에 허락 없이 업로드하였고,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는 전송을 위해 Cloudflare의 CDN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년 12월 11일 C 정보 사이트에 업로드된 일러스트 삭제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Cloudflare에도 침해를 이유로 하는 조리상의 삭제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 (2) 쟁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C 정보 사이트 외에도 CDN 업체에 삭제의무 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3) 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

도쿄지방법원은 2018년 1월 28일에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Cloudflare에 원고의 일러스트 삭제 및 정보 사이트 관리자의 로그인 시 IP 주소 등 정보 공시를 명령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적판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Cloudflare가 해적판 사이트 대책을 강화하더라도, 해적판 사이트들이 다른 CDN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지속할 수 있으므로, 해적판 사이트의 근절 및 적발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존재한다.

#### 나. 해외 법제에 따른 CDN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의 성립 가능성

##### 1) 미국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의 법리

‘기여책임’의 요건은 (i)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ii) 침해행위를 유인, 유발하거나 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설명되고 있고, 특히 ‘실질적 기여’ 요건에 관하여는 타인의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및 능력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대위책임’의 요건은 (i) 침해행위를 통제·감독할 권리와 능력이 있을 것, (ii) 당해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직접적 경제적 이익’ 요건에 관하여는 ‘유치이론’ 즉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 외에 고객 유치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sup>82)</sup>

## 2) CDN 사업자의 권한과 기술

CDN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를 배포하는 네트워크와 캐싱기능을 포함하여 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웹사이트들이 CDN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불법 콘텐츠 이용자들의 콘텐츠 로드 속도를 높임으로써 사이트의 품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CDN 서비스는 이용자와 호스트 사이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CDN 사업자는 의심스러운 트래픽 패턴을 감지하여 웹사이트인 호스트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CDN 사업자에 대한 불법 콘텐츠 유통,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을 주장하는 소가 해외에서 발생해왔다.

### 다. 우리나라 법리에 따른 CDN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성립가능성

저작권침해 결과발생지에는 저작권침해 지향지가 포함되는 관계로 국제사법상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러한 논리는 준거법과 관련하여 저작권침해가 의도적으로 지향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공법적 법률관계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규제는 입법관할과 집행관할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는 주권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외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베른협약이 채택된 당시에 유럽의 상황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별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한 당시에 이 협약을 어떻게 해석할

---

82) 신지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경인문화사, 2021, 152면.

지는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이 협약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우리나라가 정할 문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침해에 대한 행정적 규제(공법적 규제)는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조약을 벗어나 우리 저작권법상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작권침해의 지향지가 우리나라인 이상, 역외적용이 아니라 역내적용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10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원은 도관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0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캐싱서비스 제공자, 저장서비스 제공자 및 검색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및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3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조문의 성격상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는 CDN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국외 소재 CDN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3. CDN 사업자를 현행 저작권법상 OSP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CDN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유형 분석

##### 1) CDN 서비스의 내용

CDN (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분산된 서버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웹사이트, 이미지, 동영상 등)를 사용자에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CDN 서비스 제공업체는 업체의 서버 네트워크에서 어떤 웹사이트의 선별된 웹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CDN 호스팅을 제공하는데, 일반적인 웹호스팅은 단일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CDN 호스팅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캐시 서버를 통한 캐싱<sup>83)</sup>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DN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콘텐츠 데이터 요청을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로 라우팅하여 지연을 줄이고 서버 과부하를 방지하는 애니캐스트, 콘텐츠 전송 시간을 최소화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응답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CDN 에지 서버, 서버의 IP 주소를 숨기는 역할을 하는 리버스 프록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에 분산된 캐시 서버와 더불어 봇(bot) 방지 기능이나 보안기능 등이 있다. 즉, CDN은 사용자와 콘텐츠의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원본 서버(Origin Server)의 부하를 줄이며, 안정성과 보

---

83) 캐싱은 파일 복사본을 캐시 메모리 등과 같은 임시 저장 위치에 저장하여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는데, CDN 호스팅은 캐시 서버가 이러한 임시 저장 위치가 된다.

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CDN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기술분석이 필요한 지점이나, 대략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캐싱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CDN 서비스의 주요 특징

### 가) 분산형 네트워크 - 캐싱 기능 및 트래픽 분산

CDN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여러 서버(PoP, Point of Presence)로 구성되어 있다. 콘텐츠를 요청한 사용자로부터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지연(latency)을 감소시키고 트래픽 분산을 통해 서버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자주 요청되는 콘텐츠(정적 파일: HTML, CSS, JavaScript, 이미지 등)를 캐시 서버에 저장한다.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 원본 서버 대신 CDN 캐시 서버가 응답하게 된다. 이러한 캐시 서버를 통한 캐싱은 원본 서버에 대한 요청을 줄이고 전송시간을 단축하여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캐시 서버를 이용하여 트래픽을 분산하는 분산형 네트워크는 원본 서버의 IP 추적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의 추적, 발견을 어렵게 하고, 불법 콘텐츠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촉진한다.

## 나) 보안 강화

CDN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DDoS 방어, 데이터 암호화(TLS/SSL), 방화벽 등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 요청이 원본 서버에 직접 도달하지 않도록 한다. CDN의 보안기능은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을 통해 SQL 인젝션, XSS, DDoS 등 다양한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CDN 서비스는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사용자 행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인간과 자동화된 로봇을 구분하고,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차단하는 봇 방지 서비스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DN 서비스의 위와 같은 강화된 보안과 봇 방지 서비스 등은 스크래이핑 등 자동화된 증거 수집 시도를 차단하고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러한 보안 기능을 악용하여 법 집행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경쟁자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 즉, CDN의 보안기능은 불법 사이트가 법적 제재를 피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다) 속도 최적화 및 동적 콘텐츠 처리

콘텐츠 압축, HTTP/2 및 TCP 최적화 등을 통해 로딩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일부 고급 CDN은 캐시가 어려운 동적 콘텐츠를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도 제공한다. 동영상이나 이미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CDN 서비스의 위와 같은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도 대용량 동영상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품질 불법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별도의 서버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하는 CDN 서비스의 위와 같은 기능은 불법 사이트들이 서버 인프라를 노출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 3) CDN의 동작 원리

웹브라우저가 실행되는 PC나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가 특정 인터넷 주소에 접근하여 필요한 콘텐츠 요청을 보내면, 해당 요청은 CDN 네트워크로 전달된다.

CDN 서비스의 애니캐스트 기능은 위 사용자의 요청을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서버로 라우팅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지연을 줄이고 분산된 서버(캐시 서버)에 캐싱된 버전의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요청된 콘텐츠가 캐시 서버에 없는 경우, CDN은 네트워크의 다른 캐시 서버에서 콘텐츠를 찾아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만약 다른 캐시 서버에서도 콘텐츠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가져와 캐싱한 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위와 같이 원본 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와 제공한 이후 동일한 요청이 발생하면 캐시된 콘텐츠를 바로 전달하여 원본 서버로의 요청을 최소화한다.

### 4) CDN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 시스템 구성 유형

CDN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는 웹페이지 개발 유형, 도메인/호스팅 서비스 유형, 콘텐츠 서버 유형, CDN 적용 방식에 따라 그 구획벽

인 시스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먼저 웹페이지 개발 유형에 따라 웹페이지를 직접 개발하는 유형과 템플릿을 사용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 개발한 웹페이지는 템플릿 기반의 웹사이트에 비해 사이트의 구조나 취약점을 분석하기 어렵다.

다수의 불법 사이트에서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안기능 강화를 위해 하나의 업체가 도메인 등록과 호스팅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호스팅 업체를 통해 웹사이트를 배포하고 Cloudflare를 통해 도메인 등록을 진행하는 방식과 같이 도메인과 호스팅 환경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하나의 추적 방법으로 불법 사이트에 대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불법 사이트가 이용하는 콘텐츠 서버의 유형으로는 로컬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유형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경우 확장성, 접근성, 가용성, 익명성, 관리용이성, 보안성 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다.

끝으로, 콘텐츠와 웹페이지 서버 운용에 있어서 모두 동일한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과 각각 별도의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불법 사이트는 후자의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법적, 기술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 나. CDN 사업자가 현행 저작권법상 OSP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여 2011년 개정에 따른 위 가목과 나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나목의 경우 일부만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법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확장된 개념에 의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은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용자가 저작물을 전달,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 내지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뜻하므로 직접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저작물을 목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84)</sup>

위와 같은 개정 이력 및 문언에 따른 저작권법의 해석상 위 가목은 인

84)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제4판), 1189면.

터넷접속서비스(단순도관) 제공자를, 나목은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 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sup>85)</sup>

앞서 살펴본 CDN 서비스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동작 원리 등을 종합하면 CDN 서비스는 캐싱 또는 더 나아가 호스팅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보이므로, CDN 사업자는 나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2)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가) 저작권법 제102조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30., 2011. 12. 2., 2020. 2. 4.>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85) 온주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법 제2조 제30호)(이규홍 집필부분)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삭제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30.>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30.>

미국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저작권법 제102조의 입법취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로 그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sup>86)</sup>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단순도관(mere conduit) 서비스를, 제2호는 캐싱 서비스를, 제3호는 저장서비스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캐싱

CDN 서비스의 동작원리는 주로 캐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캐시 서버를 서비스에 제공하는 CDN 사업자가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sup>87)</sup>과 함께 다음과 같은 책임제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할 것
- ②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할 것
- ③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킬 것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④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

---

86) 이해완, 앞의 책 1190면.

87)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

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

④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할 것

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 ⑤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할 것

## 다) 호스팅

현재 등록기관이 Cloudflare이거나 확인되지 않는 사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가 호스팅 업체를 통해 DNS 등록을 진행한다. CDN 서비스가 전통적인 의미의 웹 호스팅<sup>88)</sup>을 하고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불분명하나, 전 세계에 설치한 지역 서버에서 “복제 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서비스(저장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CDN 서비스 사업자가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술한 캐싱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책임 제한 요건과 함께 다음과 같은 책임제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88) 웹 호스팅은 웹 사이트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고 데스크톱, 모바일 및 태블릿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손쉽게 액세스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 시킨 경우
- ③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CDN의 저장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가 문제되는데, 저장서비스의 면책 요건 중 특히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가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침해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면책받을 수 없다.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정황을 인식한 경우 침해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복제, 전송에 대한 권리자의 중단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정황의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3) CDN 사업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

#### 가) 저작권법 제103조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2020. 2. 4.>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30., 2011. 12. 2.>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30.>

저작권법 제103조의 규정은 제102조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면책 요건을 규정한 것에 상응하도록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와 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중단 절차도 유형별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미국 DMCA의 notice and takedown 규정과 유사하다.

## 나) CDN 사업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 가능성

CDN 사업자의 저작권침해 책임 여부가 문제된 다음과 같은 외국의 분쟁 사례<sup>89)</sup>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법원은 CDN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CDN 사업자에게 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독일

DDL-Music은 음악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2019년 6월 독일 유니버설 뮤직은 DDL-Music에서 독일 가수 Sarah Connor의 앨범 Herz Kraft Werke의 트랙에 대한 링크를 찾은 후 Cloudflare에 저작권 침해 통지를 했다. 유니버설 뮤직은 트랙에 액세스 할 수 없도록 할 것과 DDL-Music 및 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Cloudflare는 고객의 활동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유니버설 뮤직이 해당 웹사이트 및 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니버설 뮤직이 청구한 소송에 대해 2020년 1월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Cloudflare에게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

89) 이철남, “CDN 업체에게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있을까”, 2020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67~68면.

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5만 유로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탈리아**

TV 플랫폼 Sky Italy와 이탈리아 축구 리그 Lega Serie A는 Cloudflare와 호스팅 제공 업체 OVH를 포함한 여러 회사와 Vodafone, TIM, Fastweb, Wind 및 Tiscali와 같은 ISP들을 상대로 “IPTV THE BEST”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밀라노 법원에 신청했다.

2020년 9월 법원은 Sky와 Serie A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피신청인 회사가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에 관계없이 IPTV 제공 업체와의 협력을 중단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Cloudflare는 침해 콘텐츠를 호스팅하지 않으며, CDN으로서 단순히 콘텐츠를 캐시하고 트래픽을 중계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파일을 호스팅하든 단순히 캐시하든 상관없이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Cloud-flare와 같은 서비스는 호스팅 제공 업체와 단순한 도관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EU 법률에 따라 분류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분류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CDN에 의한 데이터 저장이 없더라도 제3자가 긴급한 절차의 대상인 불법행위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CDN의 서비스를 금지할 것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가) 저작권법 제104조**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나) CDN 사업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CDN 서비스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서버 관계에서 콘텐츠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CDN 사업자에게 저작권법 제104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 다. CDN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정보제공명령의 가부 및 집행

#### 1) CDN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정권고, 정보제공명령의 가부

CDN 사업자는 대체로 외국 사업자가 많으나, 여기서는 일단 국내에서 이루어진 불법복제행위임을 전제로 시정권고, 정보제공명령의 가능성을 논

하기로 한다. 국내사업자에 의한 CDN 서비스 또는 국내에 캐시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사업자에 의한 서비스를 통한 불법복제행위가 그 대상이다.

국내에 캐시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사업자에 대해서 시정권고 등이 가능한지 저작권법의 입법관할권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에 캐시(에지)서버를 두고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입법관할권의 일반원칙인 속지주의 관점에서 한국 저작권법의 적용이 무난하게 긍정된다고 판단된다. 최근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5항도 같은 관점에서 국내에 캐시 서버를 둔 외국 사업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sup>90)</sup> 다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국내사업자로 한정된다는 견해가 있고(다만 위 견해는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정의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한다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당시를 전제로 한 것이다),<sup>91)</sup> 위 신설조문에 대하여 방통위도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도 개정안의 의무 주체에 포함되는 모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주요 CDN 사업자가 바로 외국사업자인 점, 정보통신망법이 역외적용, 국내대리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CDN 사업자는 외국사업자를 포함한다고 생각된다. 위 신설조문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도 “국내에 서버를 설치한 국외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수범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주요 외국 CDN사업자인 Cloudflare, Amazon CloudFront, Akamai는 모두 국내에 캐시 서버를 두고 있다.<sup>92)</sup> 저작권법의 역외적용

---

90)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91) 윤종수, 앞의 논문, 33면

92)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 문제되는 외국사업자의 경우는 다음 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CDN 사업자를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해석한다면 법리적으로 시정권고, 정보제공명령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보호원은 CDN 사업자에게 ①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②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③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또한 문체부 장관은 CDN 사업자에게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3. 8. 8.>

[본조신설 2009. 4. 22.]

## 2) 집행 가능성 및 집행절차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로는 GS네오텍, SK브로드밴드, KT, LG 유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 등이 있다. 외국사업자로는 미국의 Akamai와 Cloudflare, 유럽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M247, 오세아니아 중심의 GSL Networks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 CDN 사업자는 국내에 지역 서버를 두고 있다. 다만, 이용계약에 따라 국내 지역서버를

이용하지 않고도 CD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지역서버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절차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조사에서 확인된 151개의 불법 사이트 중 130개가 Cloudflare의 CDN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본 서버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Cloudflare CDN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Cloudflare는 국내 지사가 설립되어 있고, 국내 캐시 서버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망 사용료 문제로 인해, Cloudflare CDN 서비스 플랜 중 Enterprise 플랜을 제외한 Free, Pro, Business 플랜에서는 국내 지역의 서버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93)</sup> 따라서 불법 사이트가 Cloudflare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경유 서버의 위치를 확인하여 국내 캐시 서버를 통한 불법복제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sup>94)</sup>

불법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해당 불법 사이트가 이용하는 CDN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정보제공명령 집행은 다음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① 불법 사이트가 이용하는 CDN 서비스의 제공 사업자가 국내 기업인지 외국 기업인지 확인하고, 국내 기업이라면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정보제공을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② 불법 사이트가 이용하는 CDN 서비스의 제공 사업자가 외국 기업인 경우 해당 불법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 등의 저장 캐시 서버의 위치

---

93) Cloudflare CDN 서비스가 국외의 캐시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속도가 5배이상 느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4) Cloudflare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의 경우, 주소 끝에 `cdn-cgi/trace`를 추가함으로써 어느 서버를 경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Claire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현재 연결 중인 서버의 IP, 연결한 서버의 ID, 연결한 서버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확인한다.

③ 캐시 서버의 위치를 확인함에 있어서, Cloudflare 서비스와 같이 불법 사이트가 이용하는 원본 서버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CDN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콘텐츠 등의 저장 캐시 서버의 위치가 국내인지 여부를 조회한다. Cloudflare의 경우 캐시 서버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는 크롬 웹브라우저의 `chrome://cache/`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해당 불법 사이트 주소의 마지막에 `"/cdn-cgi/trace"`을 추가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정황을 인식”한 경우 침해 중단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향후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캐시 서버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 내지 동기가 있다.

④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콘텐츠 등의 저장 캐시 서버의 위치가 국내인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CDN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정보제공을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⑤ 위 ④의 집행에 있어서 Cloudflare와 같이 외국 사업자의 지사가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지사에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지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메일 등으로 통보한다. 외국사업자(국내 지사 포함)에게 시정권고를 이메일로 통지 내지 경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점은 후술하기로 한다.

## 4. 해외 OSP에 대한 제3의 행정조치 관련 연구

### 가. 저작권법상 행정조치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적용 근거

#### 1) 국가관할권의 의미 및 기본 원칙

저작권법상 행정조치를 외국사업자 특히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국가관할권 특히 입법관할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관할권은 국가의 권한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것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그 형태를 입법관할권, 재판관할권, 집행관할권(행정관할권)으로 구분된다.

입법관할권은 한 국가가 특정사항을 법으로 규정할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로서, 국가가 입법부의 행위,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혹은 법원의 판례등을 통하여 법규범을 선언하는 힘을 말한다.<sup>95)</sup> 재판관할권은 법원에 의한 사법절차에 당사자를 복종시키는 권한으로서 대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지칭한다.<sup>96)</sup> 집행관할권은 한 국가의 법이나 판결뿐 아니라 행정부의 명령 등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집행관할권은 입법관할권을 그 전제로 한다.<sup>97)</sup> 재판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은 모두 법규범의 집행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합하여 집행관할권으로 부르기도 한다.<sup>98)</sup>

국가관할권의 문제를 각국의 개별적 판단에 일임하게 되면 국제적 마

---

95) 김대순, “국가관할권 개념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권, 1995, 207면.

96) 최공웅, “섭외사건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 1994, 1089면.

97) 고아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 그 적용을 위한 입법적 제언을 포함하여”,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39면

98) 윤종수, 앞의 논문, 36면.

찰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그 한계를 정하게 된다.<sup>99)</sup> 한때는 주권의 최고성이 강조되어 대외적으로 제한 없는 무한의 권리로 이해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타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며 국제협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제한적 주권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국가관할권은 이러한 제한하에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00)</sup>

## 2)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준

본 연구와 같이 행정조치와 관련한 공법적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법관할권이 검토되어야 한다. 입법관할권에 의해 먼저 법규범이 무엇인지 선언된 후 법원 판결, 행정부의 행정처분의 실제적 집행력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준으로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적 관할권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속지주의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 내지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속지주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 영토 내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sup>101)</sup> 국가주권은 그 영토내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상에 근거한 것이며 국가관할권 원칙 및 행정규제의 적용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태도이다. 속지주의는 행위주체의 소재지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주관적 속지주의와 행위의 결과발생지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객관적 속지주의로 구분된

---

99) 고아라, 앞의 논문, 39면

100) 윤종수, 앞의 논문, 36면

101) 이하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적 관할권 개념에 대해서는, 윤종수, 앞의 논문, 40면을 인용하였다.

다.<sup>102)</sup> 주관적 속지주의를 사건이 자국에서 시작된 경우 어디서 완료되었는지 관계없이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객관적 속지주의는 사건이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자국에서 완료되는 경우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나,<sup>103)</sup>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다.

속인주의는 속지주의와 달리 자국민에 대하여는 그가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경우 자국민이 행위자(범죄자)일 때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극적 속인주의, 자국민이 행위의 상대방(피해자)일 때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소극적 속인주의이다. 형법은 속지주의(제2조)와 함께 적극적 속인주의(제3조), 소극적 속인주의(제6조)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보호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 원칙이 보호주의이다. 보호주의는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국의 주권의 존재나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관할권을 갖게 하는 원리이다. 즉 수동적 속인주의가 개인적인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보호주의는 국가적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외에 국가관할권의 이론적 원칙으로 보편적 관할권 이론이 있다.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가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연결점을 기초로 국가관할권을 인정한 것과 달리 보편적 관할권은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침해 행위, 예를 들어 전쟁범죄, 집단학살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보편관할권은 국가주권과 국내문제불간섭을 기초로 하는 현대국제법의 구조 하에서는 결코 일반화될 수 없는, 단지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원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sup>104)</sup>

---

102) 온주 자본시장법 제2조(석광현, 이종혁 집필 부분)

103) 윤종수, 앞의 논문 40면

104) 김대순, 앞의 논문, 213면

저작권법상 행정조치를 외국사업자의 국외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는 위 4가지 국가관할권 원칙 중 주로 속지주의와 관련된다. 행정규제를 (소극적) 속인주의에 의해 규율하는 것은 행정규제가 자국의 특수한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타국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보호주의, 보편적 관할권 이론은 저작권 침해라는 사인간에 발생하는 재산권침해 행위에 적용될 근거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 3) 역외적용

#### 가) 역외적용의 개념

역외적용이란 국내법은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적용된다는 일반원칙에 불구하고, 규제의 필요성 때문에 일정한 원리에 근거하여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외적용 내지 역외관할권의 개념을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속지주의 개념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자국의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역외적용이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과 국제공법(국제행정법)은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은 등가성 내지 평등성이 인정되는 서로 다른 법질서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정법, 형법 등을 포함하는 공법은 복수의 법질서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자국 법질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sup>105)</sup> 따라서 국제공법의 관점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외

국의 실무, 예양(comity)을 고려하더라도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 나) 국내법상 행정조치의 일반적 적용범위

국내법상 행정조치의 국제적 적용범위는 전통적으로 속지주의에 따르고 있다. 속지주의는 규제행위의 일부 구성요건이 국내에서 행하여진다면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sup>106)</sup> 행정조치의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행위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행위주의 또는 행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sup>107)</sup> 속지주의는 행위주체의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속지주의와 행위의 결과발생지국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속지주의로 구분된다. 객관적 속지주의에 따르면, 결과발생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론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의 핵심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역외적용의 법리적 근거로는 효과주의를 들 수 있다. 효과주의는 속지주의를 변형·보완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효과주의는 법익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속지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되 그 적용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효과주의를 입법화한 공정거래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외국에서의 행위가 국내에서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108)</sup>

---

105) 온주 자본시장법 제2조(석광현, 이종혁 집필 부분)

106) 온주 자본시장법 제2조(석광현, 이종혁 집필 부분)

107) 온주 자본시장법 제2조(석광현, 이종혁 집필 부분)

## 나. 외국 OSP에 대한 시정권고의 적법성 여부

### 1) 국가관할권 및 역외적용의 관점

국내법상 행정조치의 국제적 적용범위에 관한 객관적 속지주의 이론에 근거하면, 위반행위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위반행위의 일부 구성요건이 국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국내법의 입법관할권이 인정된다.

국제공법은 아니지만 국제사법 이론은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구분하면서, 행동지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외부적 효력이 있는 행위가 실행된 장소 즉 불법행위시 행위자 소재지를 의미하고, 결과발생지는 보호되는 법익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직접 침해된 장소 즉 법익침해 당시 당해 법익의 소재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행동지 및 결과발생지 개념은 국제공법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발생지 개념을 고려하면, 외국 서비스가 국내를 지향하고 (서비스언어, 결제방식 등) 국내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쉽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 국내에서 복제권 침해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객관적 속지주의 이론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에 기하여 외국 OSP에 대해 시정권고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역외적용에 관한 효과주의 관점에서 위와 동일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2) 행정절차법상 송달

---

108)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269 판결 등

저작권법상 시정권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다만 행정처분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sup>109)</sup>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행정절차법 제3조). 행정절차법은 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14조), 이에 따르면 시정권고와 같은 행정지도를 통지할 때는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만약 송달받을 자의 주소, 이메일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제4항). 다만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제3항).

먼저 외국사업자에 대한 통지 방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점은 행정절차법 제14조가 외국사업자에 대한 통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최초로 역외적용을 긍정한 흑연전극봉 판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은 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이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해서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02. 2. 22. 등기우편으로 피심인들의 영업소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요구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개최 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정부과천청사 게시판 및 공정거래위원회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도 병행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외국 OSP에 대해서는 그의 주소, 영업소 등으로 우편송달하여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소를 찾기 어렵거나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메일에 의한 통지가 필요하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

109) 손승우 외 3인, “저작권보호 시정권고 심의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0, 22면 참고

송달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허용하므로, 저작권법에 그에 관한 특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원은 외국 소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소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편에 의하여도 시정권고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국제예양(comity)의 고려

객관적 속지주의 내지 효과주의 이론에 따라 역외관할권,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사고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역외적용을 무한정 긍정할 수 없고 국제예양의 원칙에 따라 적용의 범위와 수준이 제한되어야 한다. 입법관할권의 범위를 각국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 버리면 각국의 주권이 충돌하여 국제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행정규제의 내용이 국제적·보편적 가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실제적 집행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적 마찰을 피하고 실제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는 해당 외국의 합법적 이익을 고려하는 국제예양의 관점에서 상호존중, 국제협력의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제3의 행정조치의 가능성

### 1) 이메일에 의한 시정권고

국내 저작권자가 베른협약 가입국 지역의 국외 침해자에게 저작권침해 중단 경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보호원은 국내 OSP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치의 적용범위에 관한 속지주의 이론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외 OSP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호원은 국외 침해자에 대해 시정권고 성격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국내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전술한 객관적 속지주의 이론, 효과주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서버 소재지 등이 모호하여 해당 OSP의 운영자가 외국 OSP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국내에서 불법복제물 접근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경우(국내 지향) 저작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해당 OSP에 대해 한국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시정권고 성격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서버 소재지, 서비스의 지향지가 명확하여 불법복제물 사이트의 운영자가 국외 OSP로 인정되고, 침해지도 외국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호원이 한국 저작권법을 근거로 시정권고 성격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서버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해당 불법복제물 사이트의 운영자가 국외 OSP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국내에서도 해당 불법복제물 접근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국내 지향) 해당 불법복제물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 OSP로 보고, 또한 저작권 침해지도 국내로 보아 한국 저작

권법에 근거하여 시정권고 성격의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리는 국제사법상 저작권 침해의 경우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국제사법 제40조).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허용하지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메일에 의한 송달을 허용하므로(제14조 제3항)<sup>110)</sup>, 그에 관한 특칙이 필요하다.

## 2) 저작권자와 공동으로 경고장 발송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때 저작권자와 공동의 명의로 문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저작권자는 당연히 저작권침해를 경고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장에 보호원의 시정권고도 함께 명기하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근거로, 보호원은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을 근거로 공동으로 불법복제물의 삭제,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외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저작권자의 권리주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원의 시정권고의 형식은 저작권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고, 이러한 방식이 행정기본법이 요구하는 법치행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행정기본법 제8조부터 제13조), 행정절차법에서도 특별히 저촉될 만한 규정은 없다. 행정기관과 권리자가 침해자에 대해 공동대응한다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사업자에 대한 대응을 효

---

110)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울적으로 시급히 처리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긍정된다고 생각된다.

### 3) 제103조 절차에서 보호원에게 대리권 부여

저작권법 제103조는 통지 후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이행한 OSP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책임 제한이라는 효과는 OSP에게 저작권자의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특정 OSP가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하여 복수의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개개의 저작권자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저작권 침해 통지를 OSP에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원이 피해자인 저작권자들로부터 침해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아 저작권 침해 통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마치 상법상 지배인의 대리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sup>111)</sup> 외관상으로 보면 보호원의 일반적인 시정권고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권한은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를 대리행사하는 것이므로 시정권고와 같은 공법상 권한과는 구분된다. 이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OSP는 제103조의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111)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⑥ 보호원은 제103조의 권리주장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원은 권리주장자를 대리하여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

#### 4) 역외적용 규정의 입법

만약 저작권법에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의 공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역외적용 규정이 있다면 외국의 반발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외국 OSP에 대해 시정권고가 가능하다고 이론의 여지없이 해석될 것이다. 현재 국내법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률 분야에서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적어도 입법체계적으로 저작권법상 공법적 조치에 대해 역외적용 규정을 두는 것이 문제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역외적용은 관련 시장과 권리자(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원이 아닌 행정주체에 의해 시정권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외국의 법체계, 실무관행과 상이하기 때문에 보편적 규범성, 국제 예양의 관점에서 저작권법상 공법적 조치에 대해 역외적용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될 요소가 있다. 국제 협력과 보편적 규범성을 기반으로 하는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성공한다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표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Ⅲ. 결론

#### 1.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현행 한국 저작권법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해외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대응에 있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시정권고 제도는 행정지도적 성격으로 인해 강제력이 부족하며, 해외 OSP에 대한 실효적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가 평균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상황과 맞물려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국내 OSP와 해외 OSP 간의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역외적용의 한계는 저작권 침해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행 법률은 역외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외 OSP에 대한 행정조치와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국제적 협력 없이 국내 법적 틀만으로는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 2. 주요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DMCA는 OSP 면책조항과 함

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콘텐츠 관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역외적용을 통해 해외 사업자의 책임도 묻고 있다. 유럽연합은 정보사회 지침과 집행지침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시간 차단과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같은 혁신적인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사이트 차단 명령(site blocking order)과 모색적 금지명령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해외 OSP에 대한 역외적용과 국제적 협력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한국에서도 해외 OSP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집행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실시간 차단과 모색적 금지명령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적 진보를 활용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3. CDN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강화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는 콘텐츠 전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인터넷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한국 저작권법상 CDN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CDN 사업자를 OSP로 해석하여 저작권법 제6장의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시정권고와 정보 제공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CDN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 CDN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콘텐츠의 적법성 확인에 관한 일정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
- 불법 콘텐츠의 삭제 및 차단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 CDN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경우, 명시적인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CDN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제도적 개선 방안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역외적용 제도의 강화

효과주의 이론 등에 의하여 해석상 저작권법의 역외적용을 긍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효과주의 이론을 긍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으며, 역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실무상 역외적용을 긍정하여 외국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개인정보 영역은 국제 실무관행상 행정조치의 역외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입법적으로 행정조치의 역외적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도입되면 외국 OSP에 대해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외적용이 긍정되더라도 외국의 실무관행, 국제예양(comity)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내용, 표현 등을 국내적 조치와 달리 할 필요 있다고 생각된다.

- 국제 협력의 강화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외 OSP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표준,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실시간 차단 및 모색적 금지명령 도입

기존의 접속차단 조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live blocking)과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5. 맺음말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는 국내법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요구한다. 한국은 해외 OSP에 대한 실효적 행정조치와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외적용 제도, 국제 협력 강화, CDN 사업자 책임성 확보, 새로운 금지명령 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도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조화를 필요로 한다. 한국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법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국내 문헌

고아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 그 적용을 위한 입법적 제언을 포함하여”,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김대순, “국가관할권 개념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권, 1995.

김동원, “불법사이트의 효과적 제재를 위한 현행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제4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발표자료, 2024. 8. 28.

김형지, “사이트 차단으로 합의 종결한 호스팅 업체 샤크텍 저작권 침해 사건과 미국의 관련 동향”,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

신지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경인문화사, 2021.

오승종,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법학회 연구보고서, 2019.

온주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법 제2조 제30호)(이규홍 집필부분)

온주 자본시장법 제2조(석광현, 이종혁 집필 부분)

온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조(석광현·이종혁 집필 부분)

- 윤종수,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공법연구 제 39집 제1호, 2010.
- 이철남, “CDN 업체에게 불법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있을까”, 2020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제4판).
- 이혜영,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계간 저작권』, 2020 여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 이규호,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모색적 금지 명령(dynamic injunction)의 도입 연구”, 『계간 저작권』, 2022 여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 이규호, “지식재산법의 역외적용”,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2022.
- 이대희, “접속차단,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가능할까?”, 한국저작권보호원, 「CSTORY」, 3월호, 2018.
- 최공웅, “섭외사건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 1994.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GLOBAL COPYRIGHT PROTECTION」, vol.8, 2012.

## 2. 외국 문헌

AVVOCATO “UMBERTO DAVID, Tutela del diritto d'autore provider di servizi e piattaforme on line”,

,<https://www.umbertodavide.it/tutela-del-diritto-da-utore-provider-di-servizi-e-piattaforme-on-line/>  
(last visited: on Dec 16, 2024)

Blake Brittain, “Cloudflare escapes copyright claims from wedding-dress sellers”, Oct 8, 2021, <https://www.reuters.com/legal/transactional/cloudflare-escapes-copyright-claims-wedding-dress-sellers-2021-10-07/> (last visit on Nov 17, 2024)

Bill Toulas, “Spanish ISPs Will Block Pirate Sites Using a Dynamically Updated Blocklist”, Tech Nadu February 20, 2020, <https://www.technadu.com/spanish-isps-block-piratesites-dynamically-updated-blocklist/93321/>, (last visit on Nov 15, 2024).

David Lindsay, “Website Blocking Injunction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s: Proportionality and Effectiveness”, 40 (4) UNSW Law Journal 1507, 1514 (2017).

Ernesto Van der Sar, “Copyright Holders Score ‘Dynamic’ Pirate Site Blocking Order in Argentina”, March 6, 2023, <https://torrentfreak.com/copyright-holders-score-dynamic-pirate-site-blocking-order-in-argentina-2>

30207/ (last visit on Nov 15, 2024)

Hans Eriksson, “Dynamic blocking injunction confirmed by Swedish Patent and Market Court of Appeal”, Kluwer Copyright Blog, <<http://copyrightblog.kluweriplaw.com/2020/07/20/dynamic-blocking-injunction-confirmed-by-swedish-patent-and-market-court-of-appeal/>>, (last visit on Nov 15, 2024)

<https://www.jdsupra.com/legalnews/copyright-s-long-arm-for-foreign-website-40842/> (last visit on November 19, 2024).

<https://www.jdsupra.com/legalnews/copyright-s-long-arm-for-foreign-website-40842/> (last visit on November 19, 2024).

Internet Society, “The Internet and Extra-Territorial Effects of Laws”, <https://www.internetsociety.org/resources/doc/2018/the-internet-and-extra-territorial-effects-of-laws/> (last visit on Nov 5, 2024).

Jaime Rodriguez and Abraham Díaz, “Dynamic injunctions in the digital environment”, World IP Review 24-04-2020, <<https://www.worldipreview.com/contributed-article>

/dynamic-injunctions-in-the-digital-environment>, (last visit on Nov 15, 2024).

King Stubb&Kasiva, “SONY Pictures Animation INC v.

FLIXHD.CC/ & ORS., CS(COMM) 366/2023 & I.A.

10681/2023, I.A. 10682/2023, I.A. 10683/2023”, June 28, 2023,

<https://ksandk.com/newsletter/sony-pictures-animation-inc-v-flixhd-cc/> (last visit on Nov 17, 2024)

Kieren McCarthy,

Cloudflare ordered by judge to help unmask two website owners“, Oct 31, 2016,

[https://www.theregister.com/2016/10/31/cloudflare\\_ordered\\_by\\_judge\\_to\\_reveal\\_customers/](https://www.theregister.com/2016/10/31/cloudflare_ordered_by_judge_to_reveal_customers/) (last visit on Nov 17, 2024)

SC IP, “APPLAUSE ENTERTAINMENTPRIVATE LIMITED

VS.META PLATFORMS INC. AND OTHER”, May 12, 2023,

[Shttps://www.sc-ip.in/post/applause-entertainment-private-limited-vs-meta-platforms-inc-and-others](https://www.sc-ip.in/post/applause-entertainment-private-limited-vs-meta-platforms-inc-and-others) (last visit on Nov 17, 2024)

TF, “Movie Studios Win Australian Piracy Blocking Injunction in Record Time”, July 11, 2023 by Andy Maxwell,

<https://torrentfreak.com/movie-studios-win-austral>

ian-piracy-blocking-injunction-in-record-time-2307  
11/ (last visit on Nov 15, 2024).